碩士學位論文

# 情報社會의
# 個人情報保護에 관한硏究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濟州大學校 行政大學院
行政學科 司法行政專攻

金 永 珍

碩士學位論文

# 情報社會의
# 個人情報保護에 관한硏究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濟州大學校 行政大學院
行政學科 司法行政專攻

金 永 珍

2001年 12月 日

# 情報社會의
# 個人情報保護에 관한硏究

指導敎授 尹 良 洙

이 論文을 行政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濟州大學校 行政大學院

行政學科 司法行政專攻

金 永 珍

金永珍의 行政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2001年 12月 日

審査委員長 _____

委 員 _____

委 員 _____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目　　次


第 1 章 序 論 ..... 1

第 1 節 硏究目的 ..... 1

第 2 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2

第 2 章 情報社會와 個人情報保護 ..... 4

第 1 節 情報社會와 個人情報와의 關係 ..... 4

1. 情報社會의 意義 및 特徵 ..... 4

2. 情報社會와 個人情報와의 關聯性 ..... 10

第 2 節 個人情報의 保護 ..... 14

1. 個人情報의 意義 ..... 14

2. 個人情報保護의 必要性 ..... 20

3. 高度情報社會發展에 따른 個人情報保護論 ..... 23

第 3 章 個人情報保護法制 比較 ..... 27

第 1 節 個人情報保護 法律制定의 必要性 ..... 27

第 2 節 각 국의 個人情報 保護 法律 ..... 28

1. 미국 ..... 28

2. 스웨덴 ..... 29

3. 독일 ..... 30

4. 프랑스 ..... 31

5. 영국 ..... 32

6. 일본 ..... 34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第 3 節 國際機構의 個人情報保護 ..... 35
1. OECD지침 ..... 35
2. 유럽연합(EU) ..... 39

第 4 節 各國의 個人情報規制 ..... 42
1. 個人情報의 收集, 蓄積에 대한 規制 ..... 42
2. 개인정보의 이용, 제공에 대한 규제 ..... 44
3. 個人情報 維持管理에 대한 規制 ..... 45
4. 個人情報시스템의 公開 ..... 46
5. 個人의 權利設定 ..... 46
6. 個人情報의 管理와 監督機關 ..... 47

第 4 章 個人情報保護의 問題點과 保護方案.. 49
第 1 節 우리나라의 個人情報保護法制 ..... 49
1. 個人情報 保護法 ..... 49
2. 信用情報法 ..... 55
3. 기타 個別法에 의한 個人情報保護 ..... 59

第 2 節 個人情報侵害類型과 實態 ..... 61
1. 個人情報侵害의 類型 ..... 61
2. 個人情報侵害 現況 ..... 63
3.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사례 ..... 66

第 3 節 個人情報 保護의 問題點 ..... 68
1. 法·制度的 問題點 ..... 68
2. 政策的 側面 ..... 70
3. 社會的 側面 ..... 71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第 4 節 個人情報保護 改善方案 ..... 71
1. 제도적인 보호 방안 ..... 71
2.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에 의한 보호방안 ..... 72
3.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방안 ..... 74
4. 이용자의 대처방안 ..... 75
5. 민간부문의 대처방안 ..... 77

第 5 章 結 論 ..... 79

參考文獻 ..... 82

abstract ..... 87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表 目 次

〈表 1〉 국내인터넷 사용 인구 ..... 7

〈表 2〉 개인정보의 종류 ..... 18

〈表 3〉 국내 기관별 해킹 현황 ..... 22

〈表 4〉 개인정보보호 ..... 40

〈表 5〉 개인정보보호법제 비교 ..... 41

〈表 6〉 개인정보의 수집, 축적 규제 ..... 44

〈表 7〉 우리나라의 情報保護 關係 法規 ..... 53

〈表 8〉 개인정보 파일 보유 현황 ..... 54

〈表 9〉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벌칙규정 ..... 60

〈表 10〉 개인정보 침해 신고현황 ..... 64

〈表 11〉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접수된 상담·신고유형 ..... 66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第 1 章 序 論

## 第 1 節 硏 究 目 的

기술문명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오늘날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은 정보기술의 진화를 통하여 성장·발전하고 그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대하면서 물리공간에 버금가는 역할과 기회의 무대로 자리 메김하고 있으며 새로운 사회, 경제, 생활의 기반이 되고 있다.[1)]

또한 사이버공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언제, 어디서라도 전 세계의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며 기업에게는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신사업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학기술의 놀라운 발전으로 정보의 양과 속도가 폭발적으로 대량화·신속화 되어 정치·경제·행정·군사·교육 등 인간생활의 모든 분야에 커다란 영향과 충격을 주게 되었다. [2)]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정보화 추진을 위한 국민적인 노력의 결과로 미국과 더불어 세계에서 첫 번째로 전국을 연결 할 수 있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이 구축되어 본격적인 사이버 시대로 돌입하게 되는 또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3)]

이와 같이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사이버 세계의 출현은 우

1) 국회사무처, “사이버정보문화선포식”, 국회사이버정보문화연구회, 2000. 8.
2) 이준섭, “정보사회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한양대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p.2.
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산업육성을 위한 기술 개발 추진 전략”, 1999,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리 인간 사회에 많은 유익을 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사이버 공간은 각종 사이버 범죄와 불건전 정보의 유통, 개인 정보의 유출 등 현실 사회의 어둡고 부정적인 부분이 재현될 위험성도 배제 할 수 없는 현실이다.[4]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정보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개인 정보의 유출·침해의 방지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정보 홍수 속에서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사회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第 2 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본 연구에서는 정보화에 따른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화에 대한 개념과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개인 정보 침해에 따른 실태를 파악, 각 국의 입법 사례와 국내의 제도를 비교하여 보다 효과적인 개인 정보 보호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 범위 및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고 제2장에서는 정보사회의 의의와 특징, 정보사회와 개인정보의 연관성을 알아보고 또한 개인 정보의 의의와 보호의 필요성, 미래 고도 정보 사회에서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하여 살펴보았으며 제3장에서는 각 국의 개인 정보보호 법제비교와 프라이버시권의 개념 변천 과정을 고찰하고 개인 정보에 대한 주요 논점을 외국 사례와 관련시켜 연구하여 우리나라의 개인 정보보호 방안에 참고 하고자 하였다.

제 4장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개인 정보에 관한 보호 법제와 침해 실태를 살펴보고 앞으로 급속도로 발전하는 정보화 시대에

4) 이준섭, “전게서”, pp.4~5.

예상되는 개인 정보보호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실질적인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방법과 사회 윤리적 측면에서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결론으로서 전반적인 연구 내용 중 도출된 개인 정보 보호 방안을 정리 기술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 조사를 통한 연구 방법을 주로 활용하였는데 논점과 관련되는 국내외 서적 출판물,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간행물 그리고 연구 기관의 각종 잡지 등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또한 관련 전문가와 정보통신분야 실무자와의 면담을 통해서 논문 내용의 보완을 도모하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第 2 章 情報社會와 個人情報保護

## 第 1 節 情報社會와 個人情報와의 關係

### 1. 情報社會의 意義 및 特徵

가. 情報社會의 意義

정보사회라 함은 정보가 중요한 요소로서 형성되는 사회이며 또한 '新媒體社會'라는 용어로 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5] 정보사회는 일반적으로 물건의 생산·분배·소비 등을 기초로 하는 생산사회의 대응 개념으로써 정보의 생산·전달·향유 등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사회를 의미하며 이 사회는 정보라는 것이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6]

최근 들어 우리는 정보화나 정보사회라는 용어를 많이 접하고 있지만 사실 인간의 집단을 이루어 살기 시작한 이래로 정보가 중요하지 않았던 적은 한번도 없었을 것이다.[7] 정보라는 것이 범주와 분류체계 또는 그 밖의 양식들에 맞게 특정목적을 위해서 정리된 자료라고 정의한다면 인간이 농경과 수렵을 하던 시대에도 어느 사냥감이 어느 시기에 어디에서 많이 발견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식의 정리된 자료는 존재하였을 것이다.[8]

또한 근대국가가 유지되던 시대에도 가장 가까이 있는 적대국

---

5) 이준섭, "정보사회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한양대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p.4.
6) 차맹진, "프라이버시 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인하대학교, 1991. p.5.
7) 지용섭, "정보사회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p.14.
8) 이준섭, "전게서", p.5.

의 군사력은 어느 정도이고 전쟁 능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제력은 어느 정도일 것이라는 식의 정보를 열심히 수집하고 유통하는 일은 역사를 통해서 지속되어 왔는데 최근에 들어서야 비로소 정보사회로 이행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최근의 기술적 발전에 힘입어 정보를 생산·유통하고 소비하는 일의 방식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새로운 성격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정보는 이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이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소비되고 유통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의 생산과 소비 유통은 사회의 전 부분에 걸쳐서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단계에 이르렀다.

즉 산업사회와는 달리 정보의 생산, 저장, 분배에 관련된 산업이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등을 비롯한 정비기술이 경제·사회·문화 등의 모든 생활영역을 지배하는[9] 이른바 정보사회로의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보 사회로의 이행은 정보가 사회의 지배적 자원으로 등장하고 그에 따라서 정보의 생산과 유통의 능력이 곧 개인과 집단의 힘의 능력을 가늠하는 잣대로 등장하는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보가 기존의 지리적·공간적 장벽을 넘어서 빠른 속도의 유통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시민들이 정치적 선호를 표현하고 이를 결집하여 정부의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방식도 기본적으로 변화 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도 제시되고 있다.[10]

정보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근본적인 변화들의 구체적인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면 먼저 정보를 생산, 저장, 분배하는 일이 경제활동의 가장 중요하고 활력이 넘치는 부문으로 등장하였다는 점

9) 강정인 "정보사회와 민주주의", 한림과학원편, 1995, p.13.
10) 이준섭, "전게서", pp. 6~9.

을 들 수 있다.[11] 예컨대 하버드 대학을 중퇴한 Bill Gates라는 젊은 사업가가 불과 10년 안팎의 짧은 기간 동안 몇 가지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생산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거부로 등장하고 또한 그가 설립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50년 또는 100년의 전통을 지닌 대기업을 재치고 빠른 성장을 계속할 뿐 아니라 미국의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성장하였다는 사실은 정보산업이 이미 경제의 핵심부문으로 등장한 것을 보여 주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보사회로의 이행은 사람들이 의사소통과 집단적 정체감 형성의 과정에서도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12] 예를 들면 전 세계의 수 천만명의 이용자가 참여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의 학생이나 연구자들은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에 관해서 미국 또는 유럽의 전공자들과 자유롭게 토론하고 논의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13] 물론 이전에도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토론이 가능하기는 했지만 이런 방식은 상당한 비용과 시간적인 간격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다소 어려웠다고 할 수 있겠다.[14]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러나 이제 초고속통신망의 활용을 통해서 적은 비용만으로 동시적인 상호대화를 통한 토론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러한 동시성의 확보는 이전의 의사소통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세계로의 진입을 의미하는 것이다.[15] 또 하나의 적절한 예로써 몇 해전에 있었던 걸프전을 들 수 있다. 미국과 중동지역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등장한 이라크간의 무력충돌로서의 걸프전은 인류역사

11) 최신용, 「정보사회와 권력관계의 변화」, 비봉출판사, 1998, p.35.
12) 최동수, 「정보사회와 이해」, 법문사, 1999, pp3~4.
13) P.F. Drucker. The Age Of Discontinuity : Guidellnes to our changing society (N.Y: haper of row .1968).
14) A.Tottler. The third wave (N.Y: bantam . 1981).
15) J. Naisbitt. megatrends (N.Y: warner Book).

상 처음으로 전 세계에 동시 중계된 전쟁으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16]

전쟁의 현장이 된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서 CNN이 내보낸 걸프전 보도는 전 세계의 시민들이 안방에서 전쟁의 실상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구 한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전 세계의 안방까지 전달됨에 따라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과 이라크의 정책 결정자들은 전 세계의 여론을 크게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17]

〈 표 1 〉 국내인터넷 사용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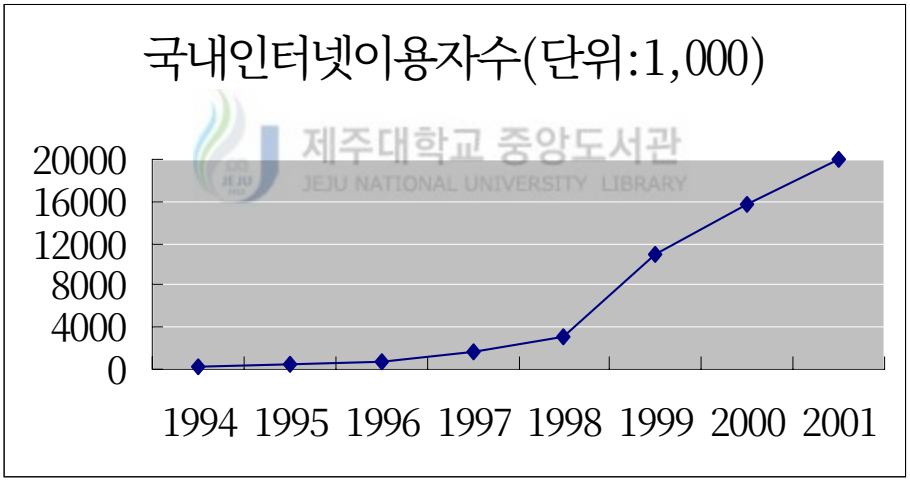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정보통신부인터넷백서, 2001, 3〉

역사적으로 정보사회는 농업사회, 공업사회 다음으로 제3의 사회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보처리 및 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의하여 실현하는 고도정보사회는 정보 산업화를 비롯하여 사회의 정보화, 가정의 정보화 등을 이루고 정치·경제·사회·문화뿐만

16) 국가정보원, "정보보호 심포지움 " 자료, 1999, p.24.
17) 장훈, 「정보정책론」, 나남출판사, 1997, pp.183~185.

아니라 법률분야까지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되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18]

나. 情報社會의 特徵

정보화사회를 간단하게 규정하면 정보의 생산과 이용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19] 정보가 어떤 물질이나 에너지 이상으로 유력한 자원이 되며 정보가치의 생산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사회가 발전해 가는 사회를 공업사회에 대응시켜서 정보사회라 한다.[20]

정보의 생산과 이용을 주축으로 영위되는 정보사회의 주요 특징 내지 성립조건을 논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21]

첫째, 정보과학, 정보기술, 통신기술이 급속히 진보하여 다방면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된다. 특히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정보혁명은 개인의 지적노동을 한편에서는 대체하고 한편에서는 향상시킨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둘째, 정보 폭증(Information Explosion)이 일어난다.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정보기술·정보수단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통신되는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것이 엄청난 힘으로 사회에 파급된다. 사람들은 정보과다에 시달리게 되고 정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선별정제의 필요는 매우 커지게 된다.[22]

셋째, 정보산업의 산업구조에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며 경제의 軟性化가 촉진된다. 경제의 연성화란 서비스화, 생산물 자

18) 차맹진, "정보사회와 프라이버시 권리의 법적보호", 통신법 및 통신관리 세미나, 1989, pp.39~40.
19) 최동수, 「정보사회의 이해」, 법문사, 1999, pp.4~8.
20) 한국통신전자연구소, 「전기통신용어사전」, 진명사, 1988, p.616.
21) 오석홍, "행정관리 연구체제에 관한 연구", 행전업론 제26권.
22) 한영춘 외 2인, 「행정학원론」, 진성사, 1988, p.115.

체의 연성화, 그리고 제품의 輕薄短小化 多品種小量生産 투자 및 소비의 연성화 등 일련의 변화를 지칭한다.

넷째, 경제적 생산 노동에서 고도의 정보통신기술이 활용되고 공장자동화(F.A.), 업무자동화(O.A.) 등 자동화가 추진되어 전통적인 공장의 개념, 사무실의 개념, 유통 판매망의 개념이 달라진다. 노동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노동의 시간은 대폭 감소되어 자유시간이 늘어나 이의 창조적 활용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수입을 얻기 위한 노동 이외의 "자유적 노동", 즉 삶의 보람을 얻기 위해 사회적 역할이 이익을 담당하려는 노동의 형태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게 된다.

다섯째, 사회적 유통율이 높아지고 교통통신의 발달은 인간의 상호작용을 어렵게 하던 시간적 공간적 장애를 대폭 감소시킨다. 쇄신의 전파는 빨라진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여섯째, 인간의 욕구가 다양화 고급화되며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에 관한 가치욕구가 커진다. 물질적 풍요를 거쳐 하급욕구들이 감퇴되며 지적 창조적 활동을 통한 자기 실현의 욕구 등 고급의 욕구들이 부각된다. 보다 온전한 자유인으로서 그 존엄성을 보장받으려는 인간의 욕망은  커진다.

일곱째, 소유의 상향과 탈물질화 경향의 대두, 고학력화 도시화 수평적 사회관계의 발전, 국민의 다양한 욕구 표출 증대와 이익집단의 발달 정치의식수준의 향상 등으로 국민의 정치적 자율성과 참여정치의 확장을 유도하는데 작용하게 된다. 컴퓨터 정보관리기술 및 뉴미디어의 현저한 발전은 민주적 정치사회화의 참여정치를 촉진하게 된다.

여덟째, 정치·행정의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와 욕구는 커지게 되고 규제와 간섭보다는 봉사부문의 행정수요

가 늘어난다. 국민의 다양한 행정의 분화는 현저히 촉진된다.

## 2. 情報社會와 個人情報와의 關聯性

### 가. 情報社會에 대한 평가

오늘날 컴퓨터는 계산기의 영역을 넘어 대량의 기억장치와 고성능의 정보처리로 되어있다. 즉, 계산능력 기억용량 등에서 인간의 능력을 능가하고 있다. 여기서 정보화사회에 대한 시각은 낙관론과 비판론으로 나누어지는데, 낙관론자들은 컴퓨터의 사용증가로 생산력증대의 결과를 가져와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노동시간이 감축되며 여가가 더 많아진다고 주장하고 있다.[23] 반면 비관론자들은 컴퓨터의 사용은 개인의 자유와 개성의 증대가 아니라 개인의 비개성화와 자유의 상실 그리고 생활상의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24] 현재 컴퓨터는 그러한 유해로운 결과를 개인에게 미치고 있고, 또한 사회의 정보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개인의 사생활을 공간적으로도 또 내용면에서도 중대한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25]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상과 같이 기술문명의 미래에 대한 명암의 예측 대립이 심각하다. 그러나 정보사회의 진행에 따라 그 화를 억제하는 것이 현대인의 정책목표라 할 수 있다. 정보화정책의 추진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지만 기계문명의 발전에 따른 인간 소외 현상을 극복해야하고 "정보화"의 촉진이나 정보산업의 진흥책의 내용이 지나치게 국가의 능률면에 치우치는 현상을 지양해야 할 것

23) 양해섭, "정보사회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pp.22~23.
24) 김재천, "정보사회에 있어서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정보공개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pp.8~10.
25) 권영성, 「신헌법학원론」, 법문사, 1997, p.399.

이고 국민적 입장에서 국민의 인권존중의 뜻을 담은 국민본위의 정보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화사회의 진전에 따른 인권보호 특히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호의 체계는 조속히 정비되어야 한다.

나. 情報公開와 個人情報保護

정보공개는 정보를 “밖으로 여는”것이며, 개인정보보호는 반대로 정보를 “안으로 닫는”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자를 함께 논의하게 되는 것은 각각 정부가 보유하는 정보에 공중 또는 개인이 접속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정부의 자의적인 활동을 견제하는 기능이 발휘되기 때문이다. 양자는 근본적으로 정보에 대한 권리라는 말로써 총괄할 수 있다. 여기서 정보에 관련된 권리란 정부에 대한 통제라는 객관적인 기능 속에 공통기반을 가지고 있다.[26]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오늘날 각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에 대한 방대한 자료와 정보는 컴퓨터에 입력되어 다른 행정기관이 원거리에서도 자료전송을 통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대한 정보의 처리 및 사용과정에서 보호되어야할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되거나 행정기관이 정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고 민주행정의 원리가 변질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알권리(right to know)”의 실현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개 및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행정정보의 통제가 확보될 필요성이 있다. 전자는 개인의 의사형성을 돕고 공정하고도 민주적인 국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의 원칙을 요청하

17)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정보정책 기반연구소 (1) ”, 1996, p.251.

는 반면, 후자는 개인 사적정보에 관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비공개의 원칙을 요청한다.

그러나 양자를 거시적으로 볼 때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과 그로 인한 부당한 법익침해의 방지라는 두 가지 목적을 적정히 조화시켜 국정운영의 투명성, 공정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제도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27]

이와 같이 개인의 권리 이익이 침해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각 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이미 제정하였거나 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두 개의 제도를 서로 목적과 구성을 달리하고 있다.[28]

정보공개는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문서 및 기타 정보에 관해서 공개를 요구하는 것인데 반해서 개인정보보호는 자신에 관한, 정보에 대한 알권리란 차원에서 양자는 국가권력으로부터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제한을 취지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또한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는 인간의 존엄성 추구라는 차원에서도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29]

그러나 정보공개는 누구에 대해서도 행정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게 함으로써 전제와 부패로부터 민주사회를 보호하고 한층 더 공정하고 민주적인 행정운영을 실현하고자 하는데 반해서 개인정보보호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권리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도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정보공개는 누구에게나 공개하는데 반하여 개인정보보호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7)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정책기반사업 (1) ”, 1996, p.251.
28) 이명구, 「신행정법원론」, 대명출판사, 1997, pp.392~393.
29) 양해섭, “전게서”, pp.22~23.

비공개를 기본으로 본인에게만 공개한다는 점에서 구별되고 있다.

정보공개에 있어서도 국가기밀이나 기업기밀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예외를 인정하여 비공개 사항을 두고 있는데 과연 어디까지 개인 정보가 보호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정보공개법안의 경우 비공개대상 정보(제7조)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비공개 사항이 지나치게 많아 자칫 정보공개법이 아니라 정보비공개를 법적으로 제도화해주는 비공개법 내지 비밀보호법으로 전락할 우려를 금할 수 없다.[30]

우리나라에서 정보공개법에 관한 첫 번째로 시도된 청주시의 조례를 예를 들 수 있다. 청주시는 1991년에 최초로 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정보공개 조례가 제정되기에 이르렀다.[31] 이에 정부에서는 1994년 3월 2일자 국무총리 훈령(제288호)으로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을 발령한 바 있다. 동시에 1994년 7월에는 정부에 "정부 공개법 심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1994년 12월 21일 "정부정보공개법 시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제기된 의견을 수렴하여 1995년 7월에 「정부정보공개법안」을 공식적으로 입법예고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입법예고안은 정부 내에서 비판적 여론과 특히 법제처의 정보공개위원회 설치 반대론 등이 제기되면서 법안의 명칭 자체도 다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 바꾸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정보공개법이 갖고 있는 특성을 살펴보면 외국의 입법례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원칙을 수용하고 있다.

첫째, 정보사회에 따른 법이란 점에서 공개대상 정보의 설정에

30)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전게서, pp.252~253.
31) 이준섭, 전게서, pp.11~13.

있어서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둘째,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비용은 실비부담에 한정시켜놓았다.

셋째, 정보공개법상의 정보공개 청구인의 권리는 주관적인 이해관계 여부를 떠나 "모든 국민"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나 행정절차법상의 문서의 열람·복사청구권(제37조)은 개인의 주관적인 권리로서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정보공개법과 행정절차법상의 상호 중복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다.

## 第 2 節 個人情報의 保護

### 1.個人情報의 意義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가. 프라이버시와 個人情報의 槪念

프라이버시라는 용어는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시대나 지역 개인의 사정에 따라 그 개념이 일정하지 않다.[32] 영국, 미국 등 주요국가의 경우 프라이버시권은 국가권력에 대하여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성립되었으나 주로 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를 위하여 발

32) 프라이버시권은 1890년 미국에서 '혼자 있을 권리'(right to be left alone)로 처음 등장한 이래 훗날 연방대법원판사가 된 브랜다이스의 논문과 판결을 통해 심화 발전되었으며, 1960년대 중반 일련의 연방대법원 찬결을 통하여 헌법상의 개념으로 인정되었다. 프라이버시권이 '정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개인이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로 인식되면서 '공대된다면 잠재적으로 당황스럽거나 해로운' 내용의 정보에 대해서도 '정보 프라이버시권'이 인정되고 있다. 김일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와 보호에 관한 연구", [정보사회와 개인정보보호], 한국공법학회 제 94회 학술발표회, 2001.5.19.

달한 것이며 인신에 대한 침해의 구제는 인신에 대한 직접적 침해의 구제 즉 육체적 이익이 보호에 그쳤다.[33] 그러나 지적수준의 발달은 사람의 정신 상태의 무형적 침해에 대한 보호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하였다.

이와 같은 프라이버시보호에 관해서는 판례 등에 의해 실정법상의 권리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으며 1965년에는 미대법원이 프라이버시를 독립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다. 프라이버시권은 소극적으로 홀로 있을 수 있는 권리에서 출발하여 사생활을 함부로 공개 당하지 않을 법적 보장 내지는 기본적 권리로 인식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헌법상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7조)" 는 조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34]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고도정보화사회에서는 프라이버시의 개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정보사회에서 정보처리 기술의 발달과 정치적·경제적 이유에서 국민 개개인에 대한 정보를 사기업 또는 국가기관에서 채집·활용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프라이버시침해의 우려가 더욱 증대되고 있다.[35]

위와 같이 프라이버시와 관련되는 용어를 분명히 구별·정의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Privacy」라는 용어는 그 본래의 의의로서 私生活·秘密·私事 등 보통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 타인으로부터 간섭받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36]

---

33) 이준섭, 전게서, p.15.
34) 방석현, 「행정정보 체계론」, 법문사, 1991, pp.508~581.
35) 양해섭, "정보사회의 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15.
36) 정연수, "개인정보 침해 유형 및 침해시 대응방안", 한국정보보호원, 2000, pp.14~15.

그러나 정보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프라이버시권을 새로운 측면에서 정의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자기에 관한 정보의 유통을 조절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 간단히 표현하면 자기정보관리권, 자기정보통제권, 자기정보결정권등 이른바 현대적 프라이버시권 신프라이버시권(New privacy)으로 호칭되고 있다. 37)

또한 이것은 자기에 관한 정보의 알권리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종래의 전통적 프라이버시권이 소극적 수동적이었다면 현대의 자기에 관한 정보의 유통을 통제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는 적극적 능동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정보사회에 있어서 프라이버시 개념은 보다 적극적으로 자기에 관한 정보의 유통을 자기가 통제 할 수 있는 권리 즉 자기정보통제권을 개인에 부여해야 한다는 이론이 성립되고 있다.38)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OECD 이사회 권고에서 「식별된 또는 식별할 수 있는 개인(데이타 주체)에 관한 정보를 개인정보」라고 볼 수 있다.39)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의 관계는 후자가 전자를 포함하는 관계에 있다. 프라이버시라 함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적사안과 결부시켜 이해되고 있으며 그 내용이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것이 특징이다. 즉 프라이버시는 개념의 상대성 때문에 명확하게 정의 할 수 없으며 주체(개인)에 따라 다르고 다의적이다.

이와 같이 프라이버시는 주관적이고 상대적 개념인데 반하여 개인정보는 어느 정도 객관적 개념을 지닌 것으로서 전자에 비하여 후자는 그 범위를 확정하기가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독일연방 정보보호법(1977. 1. 27제)의 제정 과정에서 개인관련정보

37) 신구현 역, 「프라이버시와 고도정보사회」, 청림출판, 1995, p.59.
38) 한국전산원, "국가정보화백서", 1995, pp.621~622.
39) 이준섭, 전게서, pp.21~22.

(personen bezogene daten)에 관한 논의를 고찰 하고자 한다. 이 법 제 2조 1항에서는 개인 관련 정보라 함은 특정한 또는 특정 가능한 자연인의 인적 또는 물적 상황에 관한 개별정보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였다. 요컨대, 특정의 개인에 관하여 지식 또는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개인 관련 정보이다. 따라서 법인이나 단체에 관한 정보 또는 통계적 정보 익명화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다.

헌법 제 17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정보 통제권 및 자기에 관한 정보의 개시정정요구권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40] 또한 개인정보는 개인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인격적 이익으로 이해된다.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 확실하게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권이 전개된 새로운 권리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개인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결정 관리 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자기정보 연람청구권, 자기정보 정정청구권, 자기정보 사용중지 삭제 청구권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즉 현대적 프라이버시권으로서 자기정보통제권이라고 볼 수 있다.[41]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또한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 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

개인정보라 함은 〈표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견의 표현, 즉 사상과 신조가 포함되며 다른 사람과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다시 말하면 개인식별정보가 주된 내용이 되는 정보라고 할 수 있다.[42]

---

40) 이준섭, 전게서, 1997, p.170.
41) 법제처,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관계법”, 1997, p.170.

〈 표 2 〉 개인정보의 종류

| 구 분 | 개인정보의 종류 |
|---|---|
| 일반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본적지, 성별, 국적 |
| 가족정보 | 부모의 이름 및 직업, 배우자의 이름 및 직업, 부양가족의 이름, 가족구성원들의 출생지 및 생년월일, 가족구성원들의 주민등록번호 및 직업 |
| 교육 및 훈련정보 | 학교출석사항, 최종학력, 학교성적, 기술자격증 및 전문면허증, 이수한 훈련프로그램, 써클활동, 상벌사항, 성격 및 형태보고 |
| 병역정보 | 군번 및 계급, 제대유형, 주특기, 근무부대 |
| 부동산정보 |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자동차, 기타 소유하고 있는 차량(오토바이 등), 상점 및 건물 등 |
| 동산정보 | 보유현금, 저축현황, 현금카드, 주식, 채권 및 기타 유가증권, 수집품, 보석, 고가의 예술품 |
| 소득정보 | 현재의 봉급, 봉급경력, 보너스 또는 수수료, 기타 소득의 원천, 이자소득, 사업소득 |
| 기타 수익정보 | 보험(건강·생명 등) 가입현황, 수익자, 회사차·회사의 판공비·투자프로그램, 퇴직자프로그램, 휴가·병가 |
| 신용정보 | 대부-잔액 및 지불상황, 저당, 신용카드, 지불 연기 및 미납의 수, 입금압류에 대한 통보 등 |
| 고용정보 | 현재의 고용주, 회사주소, 상관의 이름, 직무수행, 평가기록, 훈련기록, 출석기록, 상벌기록, 성격테스트 결과, 직무태도 |
| 법적정보 | 전과기록, 자동차교통 위반기록, 파산 및 담보기록, 구속기록, 이혼기록, 납세기록 |
| 의료정보 | 가족병력기록(심장병·암·알콜 중독·정신병 등) 과거의 의료기록, 정신질환 치료 여부, 신체장애, 혈액형 등 |
| 조직정보 | 노조가입, 종교단체 가입, 정당의 가입, 클럽회원, 자선단체활동 |
| 습관 및 취미정보 | 흡연, 음주량, 선호하는 스포츠 및 오락, 여가활동, 비디오 대여기록, 도박성향 등 |

〈자료출처 : 정보통신부 인터넷백서〉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42) 이명수 외 1인, 「요해헌법」, 대명출판사, 1997, p.282.

나. 個人情報보호의 範圍

개인정보의 보호 문제와 관련하여 개인의 권리와 권익이 어떠한 형태로든 침해받지 않도록 범위가 명확히 확정되어야 한다. 법적인 보호의 경우 일본의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전자계산기처리에 따른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의 적용대상을 상세히 규정하였는데 이를 상세히 분류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1)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다. 즉 자연인으로서 현재 생존하고 있는 개인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이미 사망하였거나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는 보호대상이 아니다.

2)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다. 구체적으로는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타인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또한 특정 정보만을 가지고는 식별할 수 없으나 다른 정보와 쉽게 조합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 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것도 해당된다. 예컨대 주소 본적만을 가지고는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나 성명과 조합할 경우 특정인을 식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적 주소 등도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다.

3) 기타 개인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기타 개인에 관한 기술이라 함은 매우 포괄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예컨대 직업, 병역, 학력, 종교, 사상 등 개인에 관한 신조신상기록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기록들이 성명 등과 결합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가 되면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4) 법인 기타 단체에 관한 정보는 예외로 한다. 이는「개인정보」를 생존하고 있는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 하겠다. 또한 법인 등의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당해 법인 등의 임원에 관한 개인정보도 제외된다.

개인정보의 범위와 관련 개인정보를 시정하려는 견해들로서[43]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①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에서 유출된 정보를 제외시키는 자는 견해 ② 성명·생년월일·직업·주소·전화번호 등을 정보보호로부터 자유로운 정보로 취급 하려는 견해 ③ 제3자에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정보를 프라이버시침해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과 이들이 정보보호조치의 적용대상으로 첨가되면 정보보호에 필요한 비용이 커진다는 점등을 들어 제외하려는 견해 ④ 정보당사자를 손상시키기 쉬운 정보를 특별 취급하려는 견해 예컨대 정치적·종교적, 신조 노동조합에의 가입, 인종, 육체적, 정신적, 건강상태 점과 등에 관한 정보 등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정보의 범위에 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나 각 정보가 결합되어서 다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할 때 개인을 동일시 할 수 있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절차에서의 적용에 있어 개인정보와 사회적 비용 및 실익을 감안하여 그 적용 범위와 강도를 규정해야겠다.[44]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2. 個人情報保護의 必要性

컴퓨터의 대량보급으로 대표되는 정보사회의 진전은 인간 생활에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함과 더불어 종래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현상을 야기함으로써 이러한 현상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요청하게 되었다. 따라서 법적인 소재, 즉 법적 보호와 규제 연구의 대상이 새로이 제기 되게 되었다.[45]

---

43) 한국과학재단, "컴퓨터 안전관리과 프라아버시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재단, 1998, pp.41~42.
44) 박병호, "정보사회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pp.24~25.
45) 이준섭, 전게서, pp.22~23.

컴퓨터를 도구로 하는 혹은 그 대상으로 하는 컴퓨터 범죄의 등장에서부터 뉴미디어를 통한 새로운 정보공개기술에 따르는 공공정보 공익정보의 공개원칙과 같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욕구 개인의 프라이버시침해의 청구권적인 보장을 위한 개인정보의 보호문제 데이터베이스, 멀티미디어 등의 매체를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저작물 보호 등과 같은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

이 가운데서 사법적으로 특히 문제되는 분야는 소프트웨어의 지위 및 법적보호, 계약법상 컴퓨터 계약의 성질 그리고 컴퓨터에 의한 불법행위 및 컴퓨터 범죄에 관한 형사법상의 시각과 컴퓨터 출력의 증거력을 중심과제로 하는 소송법분야이다.

합법적인 연관에서 주로 문제되는 것은 프라이버시보호와의 긴장관계라 하겠다. 이 경우에는 몇 가지 시각을 가질 수 있는데 정보사회에서 더욱 노출되기 쉬운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률의 제정 문제 정보화사회의 민주성을 보장하고 동시에 정보의 원활한 소통 취득을 도모하기 위한 정보자유권의 제정문제가 중요하다 하겠다.[46]

정보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특히 컴퓨터의 보급과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정보통신의 발달이 개인정보의 집중과 여러 기관에서의 개인정보의 이용을 가능하게 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노출에 대한 경계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행정기관 및 사설기관에서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개별적으로 채집 저축된 개인정보가 하나의 중앙기관에 집중 처리될 때 의도적 조작 또는 실수로 인해 특정개인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형성될 경우 그 수정이 어려우므로 그 피해는 실로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

46) 신구현 역, 「프라이버시와 고도정보사회」, 청림출판사, 1995, pp.195~200.

〈 표 3 〉　국내 기관별 해킹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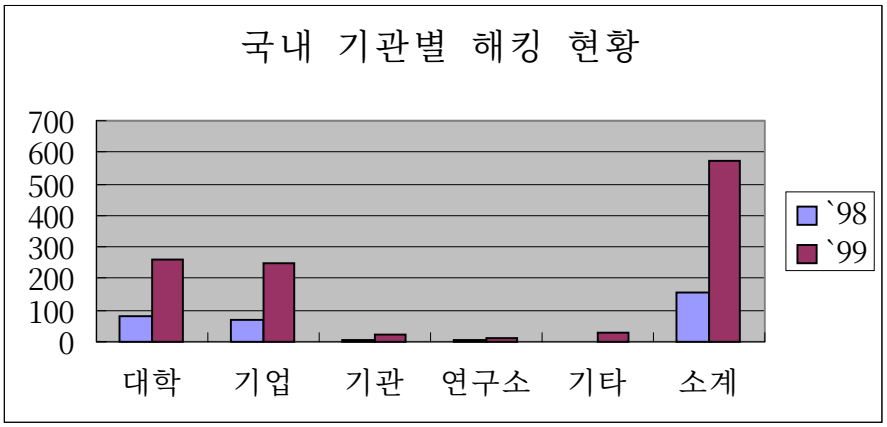


〈자료 : 국가정보원 세미나, 2000.6 〉

정보의 홍수 속에 사는 개인은 정보유통에 의해 “투명한 세계로” 만들어져서 각자의 신원이나 재정상황 교통관계 그리고 심신의 상태가 전혀 예기치 못한 관찰자에 의해서도 발가벗겨지게 되며[47] 기록자체가 정확하지 아니하여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조치는 공공기관의 경우는 물론이고 정보를 사무능률의 향상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영리수단화하는 정보은행 등이 출현하고 있는 민간부문에서도 적절히 규제할 필요성이 생겨난다.[48]

또한 각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기반구조(Information Infra-structure) 추진작업은 새로운 사회간접자본(SOC : Social Over head Capital)의 개념에서 진행중이며, 세계적인 정보기반구조(GII :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사업과 연계되어 국제적 정보통신망이 연결됨으로써 국가간 원활한 자료의 송수신이 매우

47) 강경근,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권”, 행정과 전산, 1988, pp.18~19.
48) 국가정보원, “정보보호에 관한 심포지움 세미나”, 2001.

용이하게 될 것이다. [49]

이와 같은 정보통신망의 연결은 각 국의 경제발전과 각종 무역거래에 매우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용자는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요구하게 되고, 데이터의 기밀성(Confidentiality), 무결성(Integrity), 가용성 및 인증 가능성 등에 더 많은 비중을 두게 될 것이다.[50] 만약 데이터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취약하다면 관련법이나 기술적인 방식, 즉 정보보호제품의 채용으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정보의 보호는 현재 각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기반구조 구축사업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또한, 전산망을 통한 주요 정보의 이용도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를 파괴, 변조 및 무단 사용하는 등 각종 정보보안에 관련된 컴퓨터 역기능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정보보호제품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3. 高度情報社會發展에 따른 個人情報保護論

정보사회의 비약적인 발전에 의하여 실현되는 고도정보사회는 이전보다 다양화, 복잡화가 진전될 것이다. 고도사회의 진전에 따라 더 한층 다양한 정보의 산업화를 비롯하여 사회정보화, 가정의 정보화 등을 이루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뿐 만 아니라 법률분야까지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정보화사회라고 하는 관점에서 파악하려고 있는 정보화는 컴퓨터와 전기통신이 통합되어 널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으로써 인식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현대에서 가까

49) 이준섭, 전게서, p.32.
50) 최동수, 「정보사회의 이해」, 법문사, 1999, p.30.

운 미래에 걸친 정보화는 독립의 컴퓨터라고 하는 이른바 「点」이 통신회선이라고 하는 「線」과 결합하여 「面」으로 확대되어 (네트워크화의 진전) 가속도적인 사회의 모든 분야 특히 가정생활까지 파급되는 경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파악할 수 있다.[51] 그 때문에 오늘날의 정보화는 마치 산업혁명이 그러했듯이 기존의 제도에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영향을 줄만한 필연성을 구비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화사회는 고도정보화사회 또는 고도정보사회라고 불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진전으로 개인정보문제를 점점 심각화 시킬 것으로 생각한다.[52]

전산망에 관련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앞으로 전산망은 광통신 기술과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더욱 고도화되고 해외전산망과의 연계도 지속적으로 확대됨으로서 고도정보사회의 필수 불가결한 사회기반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며 정치, 사회, 문화 등 우리생활의 구석구석에 미치지 않는 부분이 없게 될 것이다.[53]

따라서 전산망 법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전산망을 고도화하고 첨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정보사회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언적 조항으로 남아있는 전산망사업자들 등의 준수사항 등 일부조항에 대한 보강과 새로운 전산망범죄에 대한 예방적 조치의 마련 등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고도정보사회화 사회에서는 전산망을 통한 정보화가 국가사회 모든 분야에 확산되기 때문에 전산망 법으로 이를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

51) 이준섭, 전게서 p.22.
52) 신구현 역, 「프라이버시와 고도정보사회」, 청림출판사, 1995, pp.223~226.
53) 이효진, "전산망의 주요내용과 향후과제", 수사연구(96. 6월호), 수사연구사, p.19.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따라서 전산망 뿐 만 아니라 민법·상법·교육법 등 모든 법률이 정보화의 진전에 적절히 대응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정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사회의 특성상 비윤리적 행위로 인한 문제점은 내부자료 변조 및 파괴 자료유출 해킹이 나타나고 주요 발생 경로는 PC통신인데 드디어 PC 통신이 또 하나의 생활 공간으로 차지하면서 이 곳에서의 질서확립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54]

이러한 PC통신에서도 인물 정보란에서 개인이 절대적인 거부가 없는 한 주요인사의 개인정보를 유료서비스로 공개되고 있으며 또한 기술적인 방법으로 타인 명의의 전자게시판을 읽거나 전자우편(E-mail)을 열람하고 동호회의 자료를 해킹하여 회원 명부를 확보하고 개인의 신용카드 마그네틱테이프에 수록된 정보를 복제하여 일본과 홍콩에 상주하는 조직원에게 복제마그네틱테이프를 보낸 신용카드를 무인현금 인출기에서 약 5억을 인출한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55]

이러한 사례들이 인터넷으로 발전하면 국가안보로 직결될 정도로 안보망에 해킹이 위협과 정보의 노력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언젠가 개인정보는 자산보다 정보를 처리 관리하는 곳에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관리하고 결국 기억에 의존하던 자신의 정보를 확인하고 검증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자신의 정보를 구입하는 사례까지 가정 할 수 있다. 정보사회에서 정보활동에 적응하지 못하면 의식주는 물론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조차 상실할 것이다.[56]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54) 한국전산원, “컴퓨터범죄와 오남용 사례 분석”, 1996, p.12, 73.
55) 한국일보, 1996, 11, 10. 기사.
56) 양해섭, “정보사회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p.22~23.

앞으로 개인정보 논의의 전개방향의 특징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론의 활성화, 개별화, 확대화, 대립의 현저화·글로벌화를 들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전개될 고도정보화사회에 있어서의 개인정보보호는 정보환경에 보다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논의의 방향설정에 참고가 될 것임에 틀림이 없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第 3 章 個人情報保護法制 比較

## 第 1 節 個人情報保護 法律制定의 必要性

정보화진전에 따라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을 이동하여 사회 기반시설을 제어 관리하는 시스템 또는 정보통신시스템에 불법으로 침입해서 피해를 입히는 전자적 피해 행위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57]

우리나라에서는 99년 4월 CIH컴퓨터 바이러스에 의해 큰 피해를 입었고, 2000년 2월에는 아마존 야후 CNN 등 미국의 유명한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사이트가 해커들의 공격에 의해 마비되는 사태가 잇따랐다. 지난 5월에는 러브레터 바이러스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20여 개국 400만 건의 피해가 발생하여 그 피해액이 약 100억불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ZD Net news) 기존의 해커들은 본인의 실력과시 차원에서 해킹을 하였으나 점차 경제적 이익, 정치적 목적, 사회적신념들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킹을 이용하는 사례(HACKTISM)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역간 갈등시에도 해킹이 이용되고 있다.[58]

이는 인터넷을 토대로 하는 지식기반 사회가 전자적 침해행위에 의해 한순간에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사회 정보화를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이와 같은 역기능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특히 금융 통신 운송 에너지 등 사회개발 시설의 정보시스템을 해커나 범죄조직의

57) 김일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정비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 연구원, 1997, pp.143~145.
58) 국정원, "정보보호 심포지움 세미나", 한국정보보호센타, 2001.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인 취약점 점검과 이에 따른 보호 대책수립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한 주요통신시설보호체계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법제정비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아진다.

## 第 2 節 各 國의 個人情報保護 法律

각 국의 프라이버시 보호법에서 중요한 권리는 「자기에 관한 정보의 유통을 통제 할 수 있는 권리」즉, 자기 정보 통제권이라고 볼 수 있다. 59)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자기 정보의 열람청구권, 정정청구권 및 삭제청구권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는 다음과 같다.

### 1.미국

미국은 전자적 침해 위협이 국가 안보에 가장 큰 장애요소가 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1998년 5월 대통령훈령(presidential decisi-on directive)을 발하여 상무성내에 주요 정보 기반보호 사무국(Critical Infrastructure Aassarance Office)을 설치하고, 주요 부처에 분야별 연락관을 지정하는 등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2003년까지 정보통신기반보호를 위한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완비한다는 목표로 관련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정보통신기반보

59) 라봉하,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관리방안", 정통부자료집, 2001, p.10.

호를 위한 기본 정책을 결정할 국가정보보호협의회(National Infr-astructure Assurance Council)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98년 4월부터 정부기반보호센타(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Center)를 신설하여 침해사고 분석 및 대응을 지원해 오고 있다.

전자적 침해 정보의 공유 및 정보시스템구축을 목적으로 99년 10월 통신 및 금융분야 정보 공유 분석 센타(Information Sharing & Analysic Center)를 설립하였으며 전력 운송 의료 등 분야별로 정보 공유 분석센터를 설치중이다. 2000년 4월 미국 상원에 인터넷과 주요정보통신기반보호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2000년 인터넷 및 주요정보통신 기반 보호법」안이 상정되었다.

## 2.스웨덴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스웨덴은 1776년이래 공문서의 자유로운 열람이 가능했으며, 개인의 비밀 보호 등의 경우에는 행정 기관에 기밀 유지를 의무화시킴으로써 대중의 프라이버시권 인식을 제고해왔다. 1969년에 컴퓨터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증가에 따라서 공문서의 공표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위원회가 창설되어, 컴퓨터와 프라이버시란 제목으로 보고서가 만들어졌다. 이로써 컴퓨터의 데이터처리와 프라이버시에 관한 입법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이와 함께 데이터법의 초안이 제시되었다. 이 법은 1973년 5월에 데이터 법으로 의결 공포되고 다음 해 7월에 전면 시행되게 되었다. 이는 프라이버시 보호의 견지에서 개인 데이터의 컴퓨터 처리를 규제하고 있는 국가 수준에서 볼 때 세계 최초의 개인 정보 보호법이다. 이 법은 개인 정보를 “개인에 관한 정보”라는 광범위한 의미로 정의하고, 개인 기록을 “자동 데이터 처리에 따라 행해지고, 당해

개인이 속해 있는 개인 정보를 내포하는 기록 전부"라고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공사 분야를 불문하고 개인 정보의 자동 데이터 처리를 모두 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법률은 공사 양부문에 있어서 컴퓨터로 처리되는 개인 데이터를 데이터 검사원의 허가에 따라 설치 및 보유토록 하며, 위반에 대해 형벌이 가해진다. 개인에게는 자신의 기록을 열람할 권리가 주어지고, 부정확한 데이터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이 법률은 개인 기록에의 접근권에 대한 구체적 절차 및 이의 신청 방법 등이 미흡하게 제시되어 있고, 언론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서는 방관적 태도를 보인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 3.독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독일의 경우는 행정 기관들 간에 상호 보유하고 있는 등록 자료를 보다 용이하게,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각종의 데이터를 1968년이래 일원적인 코드로 정리하는 작업이 연방 내무성에 의하여 추진되었다. 이에 따른 프라이버시권 침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연방 의회는 그 다음 해부터 저장된 데이터에 기초한 개인 비밀의 침해의 배제를 연방 내무성에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연방데이타보호법 제정을 위한 노력이 1970년부터 시작되었고, 다음해 7월에 데이터 보호의 기본 문제에 관한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이것은 1972년에 의회에 제출되어 1976년에 의회를 통과하고, 그 다음 해 1월에 연방 데이터보호법으로 공포되었다. 전면적인 시행은 2년 후인 1978년 1월부터이다.

이 법률은 컴퓨터에 의한 데이터 처리 여부는 불문하고, 공적

부문과 제3자를 위해 직업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민간 부문으로 나누어 시스템 설치와 제공 등을 허락하되 민간 부문을 보다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개인에게는 자신의 데이터를 열람하고 정정을 청구하는 권리가 주어져 있다. 규제는 연방 데이터 보호 감독관, 혹은 각 기관 내의 데이터 보호 수입자가 임용되고, 州의 관할 기관으로부터 감독을 받는다. 컴퓨터로 처리되지 않은 개인 데이터의 제3자에 대한 제공이 아닌 경우와 보도 목적에 의한 개인 데이터 보유 및 처리는 본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독일의 연방 데이터보호법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인격권의 보호를 사적 영역으로만 축소하고 있고, 州 법에 비해 구체적이 아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사적인 기관의 영업적 이득을 위한 홍신소 등의 활동을 인정하고 있어서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 또한 보호 가치가 있는 당사자의 이익 침해 방지의 면에서 보호 가치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는 구체적인 보호를 회피하는 처사로 판단되므로, 역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된다. 데이터 처리의 허용 요건으로서 당사자의 동의만을 제시한 것으로는 미흡하며, 적법한 목적 수행에 대한 심사가 요청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4.프랑스

프랑스에서는 1960년대 후반 이후,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처리의 급속한 증가에 의해서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프랑스 정부는 1972년에 법무성을 통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검토를 시작하고, 이로써 설치된 정보처리와 자유에 관한 위원회의 보고를 통하여 1977년 12월

국민의회에서 “정보 처리 축적과 자유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 그 다음 해에 공포하였다.

이 법률은 컴퓨터로 처리된 개인 데이터만을 대상으로 하며, 데이터의 수집 및 기밀 보호에 관한 규정은 처리 형태를 불문하고 적용된다. 개인 데이터베이스는 상기한 특별 감독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만 설치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특정 데이터 수집에 대한 규제가 따르며, 데이터베이스 내용의 공시가 요청되고, 개인에게는 자신에 대한 기록을 열람하고, 정정을 청구하는 권리가 주어진다.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국민들의 특성상 프랑스의 프라이버시 보호 입법은 언론 보도의 자유를 최대로 보장하고 있는 점에서 독특하다. 나아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정보 시스템의 설치 조건까지도 통제하는 등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점도 특이하다. 그러나 이 보호법은 실효성은 높으나 예외 조항이 빈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5.영국

영국은 종래부터 주거침입, 저작권 침해, 비밀의 침해, 명예훼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적인 법률에 의해 프라이버시 영역에 속하는 모든 권리가 보호되어 온 점에서 다른 나라와 구별된다. 그러나 매스미디어의 발달 등 새로운 발전에 의해 기존의 법체계로 다룰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입법 제정의 시도가 생겼다. 1961년에 프라이버시 권리 법안의 제안이 있었으나 이것은 정부측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 후에 나온 1970년의 프라이버시 권리법안도 정부측의 반대로 무산

되었다. 영국에서는 1960년 후반 이후에 대두된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처리와 프라이버시의 문제 발생에 즈음하여 데이터 감시, 개인정보 규제 등의 목적으로 데이타베이스 설치의 신고제, 공공 및 민간 기관 보유 기록에 대한 개인 당사자의 데이타 열람, 정정 청구권 인정, 정보은행 심판소의 허가 규정 등이 심각히 논의된다.

1970년에는 프라이버시 위원회가 발족되며, 이 위원회는 프라이버시 문제를 야기하는 사항의 제시와 함께 그 구체적인 권고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 이후 1975년에는 내무부가 컴퓨터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백서를 발표했는데 이 백서는 비교적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를 간과한 감이 있다. 여기서는 단지 감시기관의 설립을 위한 입법과 입법이 될 때까지 활동할 데이터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감독기관의 형태와 적용 제외의 범위 등에 대한 검토를 제안했을 뿐이다. 1976년 7월에 설치된 데이타보호위원회는 곧바로 조사활동을 개시하여 내무부 백서가 제기한 입법 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현재 영국은 1970년 6월에 시행된 전자계산기 처리정보의 남용에 의한 프라이버시의 침해 방지에 관한 법률, 여타의 관련 법률, 그리고 1984년 7월에 제정된 데이터 보호법을 통하여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있다.[60]

영국의 데이터 보호법이 가진 주요 기능은 개인 데이터의 등록제도와 그 감독에 있다. 그 규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등록 시에 정해진 내용 이외의 개인 데이터를 보유하는 행위, 둘째, 등록 시에 기재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당해 데이터를 보

60) 정통부, "정보화역기능방지대책 및 정보보호기능강화방안", 정통부, 1999.

유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셋째, 등록 시에 기재되지 않은 정보원으로부터 얻은 당해 데이터, 또는 그 데이터에 포함된 정보를 획득하는 행위, 넷째, 등록시에 기재하지 않은 자에게 자신이 보유한 데이터를 개시하는 행위, 다섯째, 등록 시에 기재하거나 기명하지 않은 외국, 또는 屬領에 자신이 보유하는 데이터를 직접, 간접으로 이전하는 행위 등이다.

이 법률은 대체로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 6.일본

1) 일본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 등의 공적 부문에서의 정책 추진을 위한 개인 정보 수집, 축적이 컴퓨터 처리와 함께 방대한 양에 이르게 되자 프라이버시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1974년 정부차원의 논의를 시작으로 1976년에는 〈전자계산기처리 데이터 보호준칙〉을 제정하여 시행하였으며, 1982년에는 행정 관리청에서 OECD 8원칙을 집약하여 5개 원칙을 발표하고 입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2) 1982년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프라이버시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하여 1992년 현재 80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시행중이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1985년 총무처 산하에 연구회를 조직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대책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이 후 1988년 12월 법률이 제정·공포되었고 이듬해 9월 시행령이 제정되어 10월부터 법률이 시행되었다.

3) 위 법률의 목적은 ①행정기관에서 개인 정보의 컴퓨터 처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②원활한 행정 운영을 도모함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과 아울러 개인의 권리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 법률의 특성으로는 ①법률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인정보의 컴퓨터 처리' 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②제정목적에서 '행정업무의 능률적 수행과 개인정보의 보호'로 한정되고 있어, 행정 업무수행을 위한 비개시 정보의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라는 점, ③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지도·감독기관으로 독립적 지위를 갖는 행정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총무처에서 처리하고 있어 법의 집행과 실효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第 3 節 國際機構의 個人情報保護

198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이사회에서 채택된 「사생활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유통에 관한 지침(guidlines Governing the protectic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e)과 1981년 유럽각료이사회에 합의된 개인정보자동처리에 관련한 개인정보를 위한 조약은 1973년 스웨덴이 정보보호법, 을 시작으로 1977년 독일 연방 정보보호법, 1984년 영국의 정보보호법을 비롯하여 각 국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입법에 수용되었다.[61]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 1. OECD지침

1980년 OECD 이사회에서 채택된 「사생활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유통에 관한 지침」은 제 1부 총칙, 제 2부 국내적용보호원

61) 김남진, "행정조사와 개인정보보호의 수집관리와 사생활보호", 한국공법학회, 1998, pp.170~173.

칙, 제 3부 국제적용보호원칙, 제 4부 국내적 실현, 제5부 국제협력으로 구성되어 있다.[62] 이 지침은 공적·사적 부분에서의 특정 개인과 관계된 모든 정보를 대상으로 하고 (동지침 제2조) 즉, 개인정보의 사생활권 보호,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장려 국내 사생활 보호입법에 의한 자유로운 정보유통에 대한 부당한 제한방지 관련 국내법규정과의 조화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중 중요한 내용만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63]

가.國內適用 情報保護 原則으로는

(1) 수집제한원칙 (collection limitation principle)

개인정보의 수집에는 제한이 있다.[64] 즉 모든 개인 정보수집은 합법적이고 공정한 방법(lawful fair means)에 의하여 하고 가능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얻은 후에 수집해야 한다.(제7조)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방법의 요건은 부당하고 불공정한 방법 예컨대 도청장치를 이용하는 등 정보주체를 상실하여 정보를 제공케 하는 것은 금지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62) 이상철, "형사절차와 정보보호", 형사정책연구회, 1996, pp.29~34.
63) Raymond WACKS, personal information, 1993, pp.218~220.
64) 미국에서는 민간부문에서의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입법을 피하고 이를 업계의 자율 규제에 맡기고 있다. 미국 정부는 EU가 개인정보보호가 미흡한 나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이전을 금지하자, EU측과 협상을 벌려 2000년 5월 「세이프하버원칙과 15개 FAQ」를 서로 확인하는 선에서 적절한 수준(adequate level of protection)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즉 미국의 업계가 상무부의 프라이버시 보호기준(Privacy Principles을 준수하여 자율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한다면 EU에서도 이를 적절한 수준의 보호로 봐준다는 것이다. 그러자 유럽의회에서는 그 다음달 22일 세이프라버 원칙이 연방거래위원회(FTC)와 교통부 소관의 기업에만 적용되고 은행과 전기통신분야는 제외된다는 것, 공적으로 이용 가능한 등기, 전화 등의 정보는 예외라는 것, 세이프하버 위반시의 손해배상을 확실히 할 것 등을 반영한 EU위원회가 적당한 시기에 개정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2) 정보내용 최신의 원칙 (data guality principle)

개인정보는 그 이용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용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것이어야 한다.(제8조) 즉 정보는 그 자체로서 이용목적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예컨대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되는 이견에 관한 정보는 오해의 소지가 많고 평가에 관련된 정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정확한 완전성 최근성의 결여로 인해 정보주체에 해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65]

(3) 目的特性의 原則 (purpose speciflcation principle)

개인정보의 수집목적은 적어도 수집시 까지는 특정되어야 한다. 그 후의 이용은 수집목적의 달성 또는 수집목적과 양립될 수 있는 경우에 제한되어야 한다. 그리고 목적이 변경될 때마다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제19조) 이 원칙은 정보내용의 원칙 및 이용제한의 원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정보가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폐기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4) 利用制限의 原則 (use limitation principle)

개인정보는 ①정보의 주체가 있거나, ②법률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적 특정원칙에 의하여 특정된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공개 이용 기타의 사용에 제공되어서는 안된다.(제10조) 예컨대 한 컴퓨터에서 승인되지 아니한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컴퓨터로 정보가 이전된 경우에는 정보의 누출이 인정된다. 특정된 목적은 정보이용에 있어 항상 판단기준이 되어야한다.

65) 천병태, "국제간 정보유통에 따른 프라이버시 보호", 한국공법학회, 1989, pp.199~220.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5) 安全保護의 原則 (security safeguards principle)

개인정보는 분실 또는 불법적인 접근 파괴 수정 공개 등의 위험에 대하여 합리적인 안전조치를 함으로써 보호되어야 한다.(제11조) 정보의 분실이나 파손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장장치가 확실히 되어 있을 때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리적 보호수단에는 잠금장치, ID카드 등이 있고 조직에 의한 보호수단에는 정보접근에 관한 등급설정과 같은 방식이 있다.

(6) 公開의 原則 (openss principle)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발운용 및 정책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공개정책을 취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존재 성질 및 그 주요 이용목적과 함께 정보관리자의 식별 수단은 쉽게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 원칙은 개인참가원칙의 전제조건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란 개인이 시간 사전지식 교통비용 등에 대하여 부당한 비용부담을 하지 않고서도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7) 개인참가의 원칙 (Indivdual partiepation principle)

개인은 ①정보관리자가 자기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정보관리자로부터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권리, ②개인에 관한 정보를 합리적 방법과 알기 쉬운 형태로 본인에게 통지되는 권리를 가진다. ③이러한 권리의 요구가 거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제시할 것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와 ④자기에 관한 정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그 정보를 말소 보완 수정시키려는 권리도 갖는다.(제 13조)

개인의 정보접근과 정보 정정 요구의 권리는 가장 중요한 사생

활보호수단으로서 정보에 대한 접근권 행사절차는 원칙적으로 간단해야 하며 적절한 시간에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8) 責任의 原則 (Accountability principle)

정보관리자는 개인보호에 관한 위와 같은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에 따른 책임이 있다.(제 14조) 정보관리자는 정보와 정보처리에 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국내법에서 사생활보호와 관련한 정보관리자의 책임을 규정해야 한다. 여기서 책임은 법적 제재에 의한 책임 이외에 자율규범에 규정되어 있는 책임까지도 포함한다.

## 2. 유럽연합(EU)

유럽연합의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는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규정으로 회원국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한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며 EU 회원국간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5년 10월 개인데이터의처리와 개인데이터의 자유로운 유통에 관련된 개인정보 지침을 채택하였다. 동 지침은 경제활동이나 행동목적, 기타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축적, 이전하는 활동에 적용된다. 또한 동 지침은 1998년 10월까지 회원국으로 하여금 다음 원칙에 따라 자국의 프라이버시법을 제·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EU 수준으로 적절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해 주고 있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개인자료의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 표 4 〉 개인정보보호

| 국 가 | 감 독 기 관 | 권한・기능 | | | | 감독 범위 |
|---|---|---|---|---|---|---|
| | | 허・인가 | 일반 지도 감독 | 불안 불만 처리 | 조사 연구 | |
| 스웨덴 | 데이타감사원 | ○ | ○ | | | 공공 민간 부문 |
| 미국 | 행정관리예산청 | | ○ | | | 국가 |
| | 프라이버시보호조사 (2)위원회 | | | | ○ | |
| 서독 | 연방데이터보호감독관 | | ○ | ○ | | 국가 |
| | 소관청(민간대상) | | ○ | ○ | | 민간 |
| 캐나다 | 주무대신(내각예산국장관) | ○ | ○ | | | 국가 |
| | 프라이버시위원회 | | | ○ | ○ | 국가 |
| 프랑스 | 정보처리와 자유에 관한 국가위원회 | ○ | ○ | ○ | | 공공 기관 부문 |
| 오스트리아 | 연방데이터보호위원회 | | | ○ | | 국가 |
| | 주 데이터보호위원회 | | | ○ | | 주・지방자치제 |
| | 소관관청(민간대상) | | ○ | | | 민간 |

〈자료 : 통신정책연구소, 전게서, p. 50.〉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표 5 〉 개인정보보호법제 비교

| 국명 | 법률명 | 제정년도 | 대상기관 | 대상정보 | 개인의 권리 | 감독기관 |
|---|---|---|---|---|---|---|
| 스웨덴 | 데이타법 | 1973 | 행정기관<br>공공단체<br>민간기관 | 전산정보 | 열람청구권<br>손해배상청구권 | 데이타검사원 |
| 미국 | 프라이버시법 | 1974 | 행정기관<br>공공단체 | 전산정보<br>수작업정보 | 열람청구권<br>정정청구권<br>불복청구권<br>손해배상청구권 | 행정관리예산청 |
| 독일 | 연방데이타보호법 | 1977 | 행정기관<br>공공단체<br>민간기관 | 전산정보<br>일부수작업정보 | 열람청구권<br>정정(차단,삭제)청구권 | 연방데이타보호감독관(민간분야에 대해서는 각 소관관청) |
| 프랑스 | 정보처리 축적 및 자유에 관한 법률 | 1978 | 행정기관<br>공공단체<br>민간기관 | 전산정보<br>수작업정보 | 열람청구권<br>정정(말소)청구권 | 국가정보처리자유위원회 |
| 영국 | 데이타보호법 | 1984 | 행정기관<br>공공단체<br>민간기관 | 전산정보 | 열람청구권<br>손해배상청구권<br>정정청구권<br>불복청구권 | 데이터보호등록관<br>데이타보호심판소 |
| 일본 |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전자계산처리에 따른 개인정보에 관한법률 | 1988 | 국가행정기관 | 전산정보 | 열람청구권<br>정정(등)청구권 | 총무청 |
| 한국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 | 1994 | 행정기관<br>공공단체 | 전산정보 | 열람청구권정정청구권불복청구권 | 총무처<br>개인정보심의위원회 |

〈자료 : 총무처능률국, 정책자료집 「개인정보보호제도」, 1998, p. 327〉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第 4 節　各國의 個人情報規制

개인 데이터의 수집, 축적, 이용에서부터 소거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처리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규제가 과하고 있는가에 관하여 각 국의 입법례를 OECD 데이터보호의 8원칙과 비교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 1. 個人情報의 收集, 蓄積에 대한 規制

개인데이터 수집, 축적에 관한 규제내용을 크게 나누면 다음과 같은 세 유형이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가. 민감한 정보(Sensitive Data)　즉,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기 쉬운 정보에 관하여서는 설치허가에 있어서 감독기관이 특별한 조건을 부과하고 강력한 보호대책을 수립하거나 또는 수집, 축적을 금지시키는 입법례가 있다. 예컨대 스웨덴법, 미국법, 프랑스법, 덴마크법 등이다.

나. 수집, 축적이 허용되는 개인데이터의 범위에 관하여도 당해 행정기관의 소관사무 또는 당해 민간부문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당연히 필요한 범위 내로 한정하는 입법례가 있는 바 예컨대 미국, 독일, 덴마크의 법이다.

다. 데이터의 수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가능한 한 개인데이터의 수집은 본인으로부터 직접 수집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미국법)

② 개인 데이터의 제공을 요구함에 있어서 요구의 근거, 당해 데이터의 이용목적의 고지를 필요로 한다. (미국법, 독일법)

③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에 의한 수집을 금지시키는 규정이 있다. (프랑스법)[66]

이것을 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66) Directive 95/46/EC of Europe Parliament and Council of 24 October 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 표 6 〉 개인정보의 수집, 축적 규제

| 입법례 | 민감한 정보 | 수집, 축적의 허용 |
|---|---|---|
| 미국헌법 | 수정 제1조(종교, 언론, 출판, 집회, 청원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 행사의 양태에 관한 기록 | · 법률에 의한 경우<br>·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br>· 정당한 법집행 활동과 관련 권한의 범위내에서 행하는 경우 |
| 프랑스법 | 인종, 정치상의 의견, 사상, 종교상의 신념, 노동조합의 소속 등 | ·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br>·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에 예외를 인정한 경우 |
| 덴마크법 | 인종, 신앙, 피부색, 정치성, 범죄기록, 건강기록 등 | ·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br>·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한 합법적으로 필요한 경우 |
| 스웨덴법 | · 형사범죄 등 전과기록<br>· 건강상태 관계자료<br>· 사회부조의 수급<br>· 기타 정치적, 사회적 견해 | · 행정기관의 권한에 의한 보유<br>· 데이터 검사원 허가를 받은 경우 |
| 영국법 | · 출신인종<br>· 정치적, 종교적 신조<br>·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성생활<br>· 형사유죄판결 | · 본인의 동의<br>· 담당 장관의 하가 |

〈자료출처 : 차맹진, 전게논문, p.136 〉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2. 개인정보의 이용, 제공에 대한 규제

가. 公的部門

개인정보시스템의 설치허가에 있어서 감독기관의 조건을 부과하는 방법(예컨대, 스웨덴법)과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당초의 데이터의 수집, 이용목적 이외의 목적에 이용,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금지한다. 그러나 내부직원이 그 직무상 당해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경우, 통계조사로 사용되는 경우, 의회의 제공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여 본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도록 하는 예가 있으며(미국) 데이터의 외부제공이 허용되는 경우에 데이터를 받는 측에서, 「공적기관이면 당해 기관의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기관에서는 당해 데이터를 알 필요가 있고 제공함으로 인하여 당해 데이터와 관계 있는 개인의 이익에 침해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추상적으로 규정하는 입법례가 있다.(예컨대, 독일법, 프랑스법, 덴마크법 등)

나. 民間部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개인정보시스템의 설치허가에 즈음하여 감독기관이 조건을 부과하도록 하고(스웨덴법) 개인정보시스템의 설치에 있어서 수집범위, 이용목적 이외의 목적에 이용 타 기관에의 제공 등을 금지하는 예(프랑스법) 민간기업 등을 그 데이터 처리형태 또는 업종에 의하여 구분하고 이를 각각 개발로 규제하는 내용을 정하는 예도 있다.(예컨대, 독일법, 덴마크법)

### 3. 個人情報 維持管理에 대한 規制

모든 국가의 입법례를 보면, 개인정보가 누락되거나 멸실, 손실되지 아니하도록 합리적인 안전보호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례(스웨덴법, 미국법, 프랑스법, 덴마크법)가 있다. 예

컨대, 최신성의 확보와 관련하여서는 덴마크법(대민부문간)에서 신용조사기관은 신용상 금지하도록 보존기간을 결정하였다.[67]

### 4. 個人情報시스템의 公開

개인정보시스템의 공개는 국민에게 시스템의 존재를 밝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도록 하고, 또한 국민의 열람청구권 등의 행위를 전제로 필요한 제도로서 각 국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공개가 인정되는 사항으로는 시스템의 명칭, 개인의 범위, 데이터의 종별, 데이터의 이용목적, 데이터를 제공하는 상대방의 기관 등 각 국의 입법례에서 거의 공통적인 요소이다. 그 밖에 개인의 열람청구권절차에 관한 사항, 데이터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도 포함되어 있다.(예, 미국법 등)

공개의 방법으로서는 관보에 공사하는 방법 (예, 미국법), 시스템 설치에 있어서 허가 또는 계출에 의한 감독기관이 「시스템일람」을 작성하고, 보유하여 국민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예컨대 프랑스법, 덴마크법), 위의 2가지 방법을 동시에 실시하는 제도를 채택하는 입법례도 있다.(예, 독일법 등)

### 5. 個人의 權利設定

현대적 프라이버시권의 개념이 자기에 관한 정보의 유통을 콘트롤 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전개됨에 따라 개인데이터에 대한 권리의 설정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하겠다. 따라서 각 국의 입법례에서 대부분 자기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67) 라봉하, "개인 정보 보호 정책과 관리 방향 연구",정보통신부, 2001, pp.10~21.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데이터가 정확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수정, 삭제 등을 청구하는 권리가 인정되고 있다. 다만, 공적부문에 있어서는 국가안정보장, 범죄수사, 세법상의 조사 등에 관한 데이터는 공익을 이유로 열람청구권을 제외시키고 있는 것이 통례이다.

## 6. 個人情報의 管理와 監督機關

개인 데이터의 수집, 처리 이용 등에 관하여 앞에서 규제내용을 고찰하였던 바, 이의 지도, 감독 등 실제로 규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의 지위가 프라이버시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으며, 각 국에서 다음과 같은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가. 사법기관 등

실정규정에 의거하여 벌칙규정을 두고 법원을 통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는 바 이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는 미국의 「1974년 프라이버시법」이 있다. 미국의 경우 법집행의 실무는 연방행정관리예산청에서 담당하고 있고, 「프라이버시보호 조사위원회」가 연차적으로 조사내용을 대통령 및 연방 양원의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실효성을 더욱 확보하고 있다.

나. 독립 행정기관 또는 위원회

개인정보보호권한을 가진 독립의 행정기관이나 또는 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법이다. 독립 정도는 각 국의 형편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단독의 지휘명령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위원의 임명권을 법원, 의회, 정부 등에 분산하고 위원에 대한 임기, 신분

보장 등 독립적 지위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 한편으로는 행정기관에서 업무를 관장하되 실질적인 업무 즉, 조사, 규제 등을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독립 행정기관이나 위원회의 경우 실법 규정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관리 책임자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방법이 있다.

(a) 是正措置 : 행정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수집, 축적, 이용에 있어서 규제권한을 가지며 위반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b) 届出制度 : 이 제도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행정위원회에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를 계출하여야 한다. 행정위원회는 시스템의 설치를 금지하기도 하고, 구속력이 있는 규칙을 발하는 권한을 가지며 계출을 수리하기 위하여 기준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준수를 확보한다. 프랑스, 독일 등이 이와 같은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c) 許可制度 : 이 제도는 프라이버시 등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보호하는데 가장 유효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행정위원회는 개인정보 시스템의 설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광범위하게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의 지도, 감독 등 사무가 복잡하며, 실시를 위하여 많은 비용과 시간을 요하는 난점이 있다. 스웨덴, 덴마크 등에서 이와 같은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第 4 章 個人情報保護의 問題點과 保護方案

## 第 1 節 우리나라의 個人情報保護法制

### 1. 個人情報 保護法

가. 制定背景

지식정보화 사회의 급속한 진전으로 대부분의 가정과 직장에 컴퓨터가 보급되고 인터넷 사용 인구가 이천만명에 육박하는 등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글로벌 네트워크 사회로의 진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 시스템에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른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 추세이다.[68] 소위 사이버테러(전자적 침해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다. 이러한 전자적 침해행위는 정보통신 시스템에 불법 침입하여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재산적 피해를 입혀 정보의 안전한 생산 및 유통을 방해하고 있다. 정보통신 시스템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는 크게 해킹과 바이러스 유포 기타 최근에 새로운 위협요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해킹이 목적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는데 종래의 해킹시스템에 불법적으로 침입할 수 있는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정치적 목적의 해킹인 핵티비즌(Hacktivism) 등이 증가하여 해킹 수법 및 목적이 과격하고 있는 추세이다.[69]

1970년대 처음으로 등장한 컴퓨터 바이러스는 인터넷 이메일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그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LOVE"

68) 김일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997, pp.147-148.
69) 국정원, "정보보호에 관한 심포지움세미나", 한국정보보호센터, 2001.

바이러스 등 작년 한해동안 전 세계적으로 컴퓨터 바이러스의 침해에 대한 피해규모가 1조 50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올 만큼 그 피해 규모 또한 매우 크다.

이처럼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의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위한 근거 법령은 부족한 상태였다.[70] 즉, 전기통신기본법과 정보화 촉진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과 국가정보원법, 보안업무 규정 등이 산재되어 있으나 주로 물리적 시설보호대책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이버공격에 대비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을 평가하여 범국가적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령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를 위하여 새로운 법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에 이르렀으며[71] 정부차원의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대책을 추진키로 하고 주요정보통신시설기반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의 사생활보호라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입법 추진하여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나. 個人情報保護의 主要 內用

(1) 적용대상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그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법 제 1조)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말하며,

70) 서유황, “개인정보보호보호법 제정과 시행성과”, 수사연구 ,1996 ,p.15.
71) 시큐리티정보, “정보보호 21세기”, 시큐리티정보, 2001, pp.84~89.

개인의 정신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 판단 평가를 나타내는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72]

공공기관의 범위는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각급 학교, 특수법인,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연금지급대상 정지대상기관 등의 기관으로 되어있다.(법 제 2조)

(2) 個人情報의 수집・보유・제한

개인정보 중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수집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법 제 4조) 또한 각 기관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 화일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여 (법 제5조) 개인정보에 대한 컴퓨터 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 個人情報화일의 공고

정보화사회에서 등장한 새로운 권리인 정보통제권이 가장 기초적인 부분은 자신에 관한 어떤 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처리되어 이용되는지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화일의 신규 보유 변경 폐지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보유한 개인정보 화일을 행정자치부 장관이 분기별 관보에 공고토록 하고 정부투자기관 등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 화일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분기별로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법 제 7조)

이와 아울러 각 기관별로도 당해 기관이 가지고 있는 화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항을 '개인정보 파일 대장'을 비치 국민들이 쉽게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알 수 있도

72) 서유창, 상게서, p.17.

록 하고 본인의 정보에 대한 열람 신청이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 (법 제 8조)

(4) 個人情報 管理 利用

개인정보의 부당한 유출 변조나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개인사생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개인정보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전산실에 대한 보호대책의 수립 입출력자료의 발생·폐기·기록·유지 개인정보의 컴퓨터 처리내역 자동기록 및 점검 개인정보 취급자별 비밀번호 부여 등 안전관리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 (법 제 9조)

또한 개인정보를 보유 목적 이외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되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의하여 제공하는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기록 관리하도록 함과 아울러 제공정보의 사용방법 사용목적 등을 제한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부당한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 (법 제 10조)

(5) 본인의 정보에 대한 열람·정정·청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은 자신의 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열람결과 잘못 기록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열람을 청구 받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열람시키도록 하고 있다. (법 제 12조 동법 시행령 14조)

열람의 청구는 개인정보화일 공고에 나타난 열람 청구 부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열람하고자 하는 항목을 개인정보화일 공고에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시된 항목을 참조하거나 해당 열람 부서에 배치된 개인 정보 파일 대장을 보고 선택하여 청구하면 된다. (법 제 11조)

〈 표 7 〉 우리나라의 情報保護 關係 法規, (2001년 현재)

| 법규명칭 | 주 요 내 용 | 비 고 |
|---|---|---|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기타 공공단체 등에서 개인정보를 컴퓨터 처리할 경우 사전통보 및 공고・개인에게 자기정보의 열람권 및 정정 청구권 제공, 처리정보에 대한 이용・제공 등 제한으로 개인의 사생활 보호 | 공포:1994. 1. 7.<br>시행:1995. 1. 7. |
| 통신비밀보호법 |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와 통신의 자유보장을 위한 법적 절차 규정 : 통신대화비밀의 보호(제3조), 비공개원칙(제11조) | 공포:1993. 12. 27<br>사행:공포 후 6개월 경과 |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 정보통신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예방 및 침해행위방지 | 공포,시행:2001. 7 (대통령령 제 17308호) |
| 헌법 | 프라이버시권리(제17조) | |
| 형법 | 컴퓨터범죄 대응 규정 : 비밀침해의 죄(제182조 제2항), 업무방해죄(제193조 제2항), 컴퓨터사기죄(제211조) | |
| 국가공무원법 | 비밀엄수의무(제60조) | 의무공무원법제6조・지방공무원법제52조・공직자윤리법제10조・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제17조 |
| 무역업자동화에 관한 법률 | 무역정보보호규정 : 전자문서・무역정보에 관한 보안(제18조), 자문서 및 무역정보공개 | |
| 전기통신사업법 | 통신비밀보호(제54조) : 통신사업자가 취급중인 통신 및 타인의 비밀보호 | 우편법제51조・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전파관리법제42조 |
| 전기통신기본법 | 하위법규인 전기통신설비의 기술수준에 관한 규칙에서 전기통신설비의 안전・신뢰성・기준확보 규정(제8조) | |
| 국민투표법 | 투표비밀보장(제67조) | 대통령선거법 제151조・국회의원법 제164조 |
| 주민등록법 | 주민등록사항의 비리누설금지(제 18조의 3) | 통계법 제18조・가사소송법 제71조 |
| 변호사법 | 비밀유지의 의무(제22조) | 근로기준법 제104조・선원법 제118조・공증인법 제5조・공인회계사법제11조・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다. 運營實態 및 成果

(1) 運營實態

개인정보보호법은 공포 후 1년 간 준비기간을 거쳐 1995년 1월 8일부터 들어가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 화일에 관하여 95년 7월 8일 및 96년 7월 16일자 관보에 공고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자신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 열람이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각 종 언론 매체 보안 세미나 학술세미나 등에서 개인정보보호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홍보하여 전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다.[73]

(2) 시행성과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전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후 사후구제도가 있는 데에 불과했으나 1995년 1월 8일 법이 시행되면서 개인정보의 수집단계에서부터 처리 과정 및 출력 단계 등에 이르기까지 사전보호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어 공공기관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유출은 불가능한 상태로 되어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표 8 〉 개인정보 파일 보유 현황

| 구 분 | 보유기관수 | 화일종류 | 보유화일수 |
|---|---|---|---|
| 중앙행정기관 | 50 | 91 | 224 |
| 지방자치단체 | 4,005 | 63 | 9,462 |
| 정부투자기관 및 기타 | 672 | 192 | 1,001 |
| 총 계 | 4,727 | 346 | 10,687 |

〈자료 : 1996. 3. 16. 관보〉

73) 이준섭, 천계서, 1997, p.47.

## 2. 信用情報法

가. 개요

민간부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법집행의 실효성 확보와 민간부분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보화의 진전과 관련하여 금융 정보, 신용정보 등의 이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자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정보에 관한 법률 등 정보의 종류에 따라 분야별로 법률을 제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신용정보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신용정보의 이용에 관한 부분과 신용정보 주체의 보호에 관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신용정보의 이용에 관한 부분은 다시 민간신용정보업자의 신용정보업(경찰청의 신용조사업법) 측면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집중관리 측면으로 나누어진다.[74]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나. 信用情報의 利用

(1) 信用情報의 集中管理

신용정보법은 동종업계간에 상호 교환하는 것이 효율적인 신용정보는 집중기관을 통하여 공동활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당초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금융기관간에 여신정보 등을 집중하여 활용하던 신용정보교환 및 활용제도를 신용 정보법에서 받아들여 법적 체계를 갖추어 준 것이다.

신용 정보법에서는 이를 발전시켜 금융기관 뿐 만 아니라 백화점 등 기타 업계에서도 집중기관을 선정하여 정보를 교환할 수

74) 임범상, "신용 정보법 관리 태도", 수사연구, 1996, p.21.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아직 금융 기관이외에 정보 집중 및 교환을 하는 업종은 없다. 금융기관 신용정보 집중기관은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부는 이에 의거하여 법시행 이전부터 집중관리 업무를 수행해 왔던 은행연합회를 집중기관으로 지정하였다.

모든 신용정보를 집중기관을 통하여 집중 및 교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보집중에 따른 업무부담과 집중정보의 유용성들을 고려하여 대상정보를 한정하고 있다. 대상정보는 신용정보법 시행령에서 정하였으며 주요한 것으로는 대출총액(개인 : 1개 금융기관 3천만원 이상, 기업 : 1개 금융기관 5억원 이상) 불량거래내역 등이 있다.

대출수요자가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 부채를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 대해 가지고 있을 경우에 금융기관이 이를 사전에 파악하고 여신 심사에 활용하는 경우나 다른 금융기관에 대해 이미 연체대출금을 가지고 있는 불량거래자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또 다른 부실대출을 막을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신용정보 집중관리의 필요성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信用情報業

신용정보업은 민간신용사업자가 스스로 수집 조사한 신용정보를 일반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서비스의 제공형태는 종전 신용조사업법에서와 같이 건별로 고객의 의뢰를 받아 조사한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와 고객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미리 메뉴화하여 D/B로 구축한 후 공중통신망을 통해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VAN사업의 형태가 있다.

신용정보업에서는 신용정보업자를 이원화하여 위의 두 가지 형태의 영업을 모두 할 수 있는 업자는 10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춘 대형업자로 한정하고 경찰청의 신용조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소형신용조사업자에게는 위 첫 번째 형태의 영업만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신용 정보업의 신규허가는 대형업자의 경우 실질적으로 5개 업체로 한정하고 있으며 소형업자의 경우 기존에 허가받은 8개 업체 이외에 신규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당초 법률제정시에는 대형업자는 100억 원 이상, 소형업자는 5천 만원 이상의 자본금만 갖추면 자유로이 진입을 허용하려고 하였으나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신용정보업자의 과당경쟁은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제한하게 되었다. 한편 신용 조합법에서는 새로이 채권추심업이라는 개념을 신설하고 대형신용정보업자가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채권추심업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서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신용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불량거래자도 증가하기 마련이고 채권회수가 어려운 경우도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채권회수를 전담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 형편이고, 더구나 개인의 경우는 채권회수를 조직적으로 행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따라서 채권회수를 관리 수령하여 주게 되면 효율성이 크게 증대하고 신용거래 나아가서 신용사회의 정착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다. 信用情報의 誤·濫用으로부터의 保護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종전 신용조사업법에 신용조사와 관한 권리보호규정이 일부 있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신용정보 주체의 권리는 법률의 보호 바깥에 방치되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법에서는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개인 및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 주체의 보호를 위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신용정보업자나 금융기관 백화점 등이 신용정보를 업무 목적 이외로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도 하였다. 우편물 발송대행업체가 무분별하게 고객 명단 등을 유출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1억원 이상의 주식회사 형태를 갖출 경우에만 금융기관이나 백화점 등의 발송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DM사에도 업무목적의 누설금지 등 신용정보법상 각종 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개인 및 기업에게 신용정보업자나 금융기관 백화점 등의 보유하고 있는 자신에 관한 신용 정보에 대하여 열람 및 정정청구권을 인정하였으며 개인 및 기업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신용정보업자나 금융기관 백화점등의 손해 배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사후적인 보상 대책을 마련하였다, 특히 신용 정보법에서는 기업이 신용정보와 차등하여 개인의 신용 정보에 대한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하여 개인의 신용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집중하거나 신용 정보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 본인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이는 본인에게 자신의 정보가 신용상태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환기시킴으로써 좋은 신용거래를 쌓도록 유도하고 원하지 않을 때는 활용을 거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3. 기타 個別法에 의한 個人情報保護

일반법의 성격을 띠는 정보보호법의 제정은 구체적인 정보보호를 이르기 위한 필요 불가결한 단계이긴 하지만 충분한 단계는 아니다. 정보보호법은 너무 일반적이며 추상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가나 사회에서 자동화된 정보처리가 강하고 광범위하게 그리고 복잡하게 이루어질수록 정보처리의 다양한 상황을 위하여서는 각 영역에 특수한 정보보호의 규범은 더욱 절박한 것 이여야 된다.

오늘날에는 국가 활동의 거의 모든 영역에 개인 관련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국가의 행동요건을 규정하는 많은 법률들이 형성되어가고 있다. 통신 기밀보호법 금융실명제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 특별법 등 수 많은 법률들도 정보 보호법에 속한다.[75]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75) 이상돈, “형사절차와 정보보호”, 형사정책연구원, 1996, p.91.

〈 표 9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벌칙규정(2001년 현재)

| 침해내용 | 법 률 | 벌 칙 |
|---|---|---|
| 타인의 비밀 침해 및 누설 |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법 | 3년 이상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 | 전기통신사업법 | 3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
| | 전기통신기본법 | 3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
|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 5년이하징역 1억원이하벌금 |
| | 신용카드사업법 | 3년이하징역 2천만원이하벌금 |
| | 무역자동화법 |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
| | 전파법 | 1년이하징역 3백만원이하벌금 |
|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 경제명령 | 3년이하징역 2천만원이하벌금 |
| | 증권거래법 | 3년이하징역 2천만원이하벌금 |
| | 의료보험법 | 1년이하징역 1백만원이하벌금 |
|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 | 2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
| 개인정보 변경 말소자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 | 10년이하징역 |
| 사기자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 | 2년이하징역 700백만원이하벌금 |
| 안전대책 및 보호조치 | 전산망 보급촉진과 이용촉진에 관한법 | 3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 | 300백만원이하 과태료 |
| | 전파법 | 10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

〈자료출처 : 한국전자통신연구소(진명사 1998), 전기통신용어사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第 2 節 個人情報侵害類型과 實態

### 1. 個人情報侵害의 類型

개인정보침해는 개인정보수집에서 유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침해 유형이 있으나 침해유형을 ①비밀 및 불법수당수집 ②목적과 사용의 위험성 ③부정확한 데이터 유통으로 인한 오인의 위험성 ④무권한 이용 및 악용의 위험성 등 4가지로 구분하고[76] 있으며 비밀 및 불법수당 수집은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 축적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일방적·자의적으로 수집된 정보는 특정개인에 대한 허상을 형성하고 이를 여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개인에게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목적 외 사용이  위험성은 각 기관들이 개인의 동의 하에 특정목적을 위해 수집한 정보를 상호간에 교환하거나 특정한 1개소에 집합시키는 경우에는 정보의 유용이나 목적 외에 사용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최초 수집 시에 유의하였던 관련 사정이 무시됨으로써 그릇된 인식을 발생시키거나 또는 부분적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에 관한 잘못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다.

목적 외 사용으로 가장 많은 유형인 개인정보 유출은 수요자와의 친분관계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지만 대부분은 신상 정보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판매하는 전문 브로커들이 각급 학교  동문회 명부와 졸업앨범 종친회원 명부, 친목단체회원명부, 각종회사의 사원명부, 보험 가입자 명단, 백화점고객카드 발급자 명부 등 입

76) 이용주, 「행정정보체계론」, 박영사, 1997, pp.543~546.

수 가능한 모든 명단을 대가를 주고 은밀히 입수하여 각 회사의 판매 영업부와 영업사원 등에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처럼 개인신상정보의 불법 유출은 피부로 느껴질 만큼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실제로 처벌받는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현실적으로 신상정보의 거래가 대부분 전문 브로커와 수요자 사이에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출이 되지 않고 브로커로부터 건네 받은 명단 원본을 파기해 버리기 때문에 증거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벌법규 또한 허술하기 때문이다.[77]

이와 같은 개인신상정보 유출 행위가 선거철에는 더욱 기승을 부려 사생활침해는 물론 공명선거 분위기를 해치기까지 하고 있다.[78] 부정확한 데이터 유통으로 인한 오인의 위험성은 부정확하거나 표기된 데이터, 과거 특정시점의 데이터, 일부분만의 데이터 등이 이용되거나 유통되는 경우에는 특정개인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할 우려가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잘못된 입력조작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는 것은 정보사회가 기본적으로 대면관계보다는 비대면으로 개인의 처리된 정보가 본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77)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산망에 의하여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침해·도용·누설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여 전산망에 수록된 자료의 불법유출 이외의 행웨에 대해서는 마땅히 처벌할 법규가 없다. 전기통신설비와 전자계산조직 및 전자계산조직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처리·보관하거나 전송하는 정보통신체는 자료를 빼내는 행위 의외에는 처벌 할 수 없다.

78) 개인정보유출은 예비 후보나 지구당의 의뢰에 따라 유전자의 이름과 주소·전화번호·가족사항 등 기본 정보 뿐 만 아니라 유전자 개인의 정치 성향까지도 그 대상이 되어 건당 용역비가 500백만원에서 1,000만원까지나 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어 수사당국의 관심을 고조시키는 실정임

무권한 이용 및 악용의 위험성은 권한이 없는 자나 데이터처리 담당직원이 부당하게 파일에 접근하여 개인 데이터를 변조 가용 또는 외부에 누설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특정 개인에 대한 인격적 침해나 명예훼손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컴퓨터 이외의 전자장비를 이용한 도청의  형태로 유출되는 경우이다. 고속도로상에서 교통사고를 경험한 사람들이 간혹 겪는 일이지만 견인차 사무실에 사고차량을 견인해 달라는 연락을 하지도 않았는데 경찰순찰차가 오기도 전에 견인차가 와서 견인해 가는 경우가 있다. 경찰에서 연락을 해준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하지만 견인차 사무실에서 무전기를 구입, 그 구역에서 사용하는 경찰 무전기의 주파수와 동일하게 조율한 다음 경찰 순찰차의 무전내용을 도청하여 사고지점을 파악해서 견인차량을 내보내는 사례가 실제 수사를 통하여 밝혀진 경우도 가끔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전화통화내용을 도청하여 이를테면 채무자의 은신처를 알아낸다든지 불륜현장을 덮친다든지 하는 사례도 종종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러한 도청행위는 주로 심부름센터 종사자들에 의하여 불법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79]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2.個人情報侵害 現況

가. 상담・신고접수 현황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개인정보침해 상담 및 신고현황은 아래와 같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상담・신고 건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아 이용자의 개인 정보 침해에 대

79) 라봉하,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관리 방안”, 정보통신부세미나 자료, 2001.

한 권리의식이 점차 신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 개인정보침해 신고현황

・2000년도

| 월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합계 |
|---|---|---|---|---|---|---|---|---|---|---|
| 건수 | 113 | 223 | 187 | 196 | 241 | 244 | 214 | 346 | 533 | 2,297 |

・2001년도

| 월 | 1 | 2 | 3 | 4 | 5 | 6 | 7 | 합계 |
|---|---|---|---|---|---|---|---|---|
| 건수 | 600 | 642 | 790 | 1,042 | 915 | 1,573 | 1,147 | 6,709 |

〈자료출처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1.9〉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나. 침해유형 분석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상담・신고 접수된 사례들의 대표적인 유형을 살펴보면 '타인의 개인 정보 훼손 및 도용'(주로 주민번호 도용에 의한 피해사례)이 가장 많았다. 대부분의 인터넷 사업자는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방법으로 서비스 가입시 주민번호를 필수적으로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번호를 도용하는 방법으로는 인터넷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해킹이나 주변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원하지 않은 정보수신'은 기업의 마케팅 수단으로 전화와 전자메일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광고성 전화나 전자메일을 수신한 경우이다. 이러한 사례는 보통 자신의 성명이나 핸드폰번호, 전자메일 주소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어 발생하는 경

우가 많기 때문에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 정보 수집' 유형과 관련이 많다.[80]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요구 불응'으로 신고 접수된 건에 대해 서비스 제공자들은 대부분 업무처리 과정상 지체되거나 실수로 누락된 경우라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이는 이용자의 권리 요구에 대해 아직까지 서비스제공자들이 민감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끝으로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은 인터넷 서비스가 대중화되고 서비스 제공자간 업무제휴가 활성화되고 있는 요즘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례이다. 회원수가 갖는 마케팅 효과를 대신하여 새롭게 채택되고 있는 서비스 제공자간 업무제휴라는 마케팅 전략은 개인 정보의 이전 및 공유를 확산시켰고, 그 과정에서 이용자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80) 개인정보의 누출 경로를 보면, 내부자 정보 오남용과 외부자에 의한 해킹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시청, 동사무소 등 행정관청이나 경찰청, 검찰청 등 국가 공공기관에서 뿐 만 아니라 전화국, 보험회사, 대학교 등 민간의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주로 내부자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이 주를 이루고 있다(한국정보보호센타, "1999 정보화 역기능 사례집" (보고서).

〈표11〉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접수된 상담·신고유형

| 침해유형 | 건수 |
|---|---|
|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 | 3 |
|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미조치 | 5 |
| 개인정보수집시 의무적으로 고지할 사항 미고지 | 5 |
|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달성후 미파기 | 41 |
| 개인정보의 임의 제3자 제공 및 사용 | 186 |
|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113 |
|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 요구 불응 | 434 |
| 원하지 않는 정보(전자우편, 팩스, 전화)수신 | 1,118 |
| 타인 개인정보의 훼손, 도용, 침해 | 2,791 |
| 기타 | 2,013 |
| 합계 | 6,709 |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자료출처 : 한국정보 보호 진흥원 2001.1.1~7.30 〉

### 3.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사례

개인정보의 오·남용으로 인해 당해 개인 정보의 주체는 인격권, 재산권 및 심신상의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다. 개인 정보의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 형태는 ①명의도용에 따른 신용사기로 인한 재정적 피해, ②명의를 도용한 자가 행한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인하여 형사 사건의 혐의자가 되거나, ③수집된 개인정보가 부정확·부적정한 경우 개인 정보 주체에 대한 그릇된 판단을 초래하여 신용 및 명예 훼손 초래, ④지속적인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감시로 불유쾌 및 불편이 초래되거나 사회적 활동에 지장을 초래, ⑤원하지 않은 광고성 정보 등의 수신으로 인한 생활의 평온 파괴, ⑥생명, 신체상의 위해 가능성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개인 정보의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는 이용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 인터넷 기업의 데이터베이스에 침입해 이 사이트 회원의 개인정보를 내려 받아 인터넷 경품 행사에 무더기로 응모한 사건 등에서는 정보주체(본인)에 대하여 직접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타인에 의해 개인정보가 오·남용됨으로써 서비스제공자등 사업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사례1 〉

I사와 S시스템 두 업체는 이용자가 회원탈퇴 등을 통해 본인의 개인 정보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는 등 개인 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각각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N사와 H사는 이용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해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이메일을 보내다 각각 300만원과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E사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아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사례2 〉

지모씨는 99년 11월 유명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N사의 서비스 이용자로 등록하면서 이메일 주소 등 신상정보를 기재한 뒤 서비스를 이용해 왔으나 지난해 2월 N사의 제휴회사인 S컴퓨터로부터 광고성 이메일을 받자 N사가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를 하였다.

S컴퓨터는 S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제공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이용하여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또한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S컴퓨터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S사는 수사의뢰의 대상이 되었다.

한편, 서울지법 민사합의 12부는 “개인 신상정보를 유출해 광고성 메일을 계속 받는 피해를 봤다.”며 S사와 S컴퓨터를 상대로 지모씨가 낸 손해 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원에 대해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S사가 회원인 원고의 이메일 주소와 주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을 사전 동의 없이 S컴퓨터에 제공, 영리목적의 광고성 메일을 전송,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인 원고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침해 위험이 발생했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판시하면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 第 3 節 個人情報 保護의 問題點

### 1. 법·제도적 문제점

우리나라의 개인 정보법에서는「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개인정보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은 개인의 사상·신조 등 개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보면 우리나라의 법이 나름대로 개인 정보를 폭 넓게 보호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의 궁극적인 목적이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고 볼 때에 이에 대한 법 명문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개인과 관련되는 그리고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개인정보라고 폭 넓게 정의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러한 개인정보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삭제하거나 가능한 초기에 익명화 하는 등의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민감한 정보(지역감정이나 사상 시비가 문제로 인식되는 한)의 구체적인 재분류에 따라 관련정보의 수집과 적정여부를 통제할 수 있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는 기관에 의한 감독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81]

첫째,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범위의 문제점이다. 정보사회에서 국가를 통한 시민의 감시는 우선 정보사회에 있어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출발점이 바로 정보조사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情報調査란 관련자에 대한 정보획득이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범위에 정보조사를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에서 "자동처리"만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 개인정보보호에서 배제되는 정보선정기준의 문제점이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나치게 많은 사람을 대통령 등에 위임함으로서 규범 명확성 원칙과 목적 구속원칙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우리나라 개인정보법에서 적용, 배제 규정이 지나치게 많은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예를 들어 국가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수집되는 정보에 관해서는 개인정보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하고자 하는 기관은 이를 반드시 사전에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통보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다시 2항에서는 그 적용 배제 사유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적용, 배제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나친 위임으로 시민들은 본인의 어떤 정보에 관하여 어떤 국가 기관이 처리·저장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셋째, 잘못된 개인정보에 대한 수정, 보완 삭제의 문제점이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관련 개인은 본인에 관한

81) 라봉하,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관리방향",정통부, 2001.

처리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잘못된 정보에 관하여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잘못된 정보의 수정권, 보완권, 삭제권 등의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구정의 미비로 인해 개인의 잘못된 정보에 대한 수정이 어려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실현에는 한계가 있다

넷째, 개인정보보호 대상에 관한 문제점이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할 때에 법집행의 실효성과 사적 부문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사적부문을 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제 22조는 공공기관 외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2. 정책적 측면

국가기관 전산망 뿐 만 아니라 민간의 각종정보 시스템에도 정보보안이라는 공통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데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보안에 정책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표준화된 보안시스템이 부재 한다는 데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국가안보 보안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 보호, 컴퓨터범죄 기업의 정보보호 문제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및 제도의 수립을 총괄하며 적절히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러한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수렴하는 기관이 부재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전산망 안전관리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보시스템

안전관리기구의 설치가 정책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분야에 대한 정책 방안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정보시스템 관련기구의 설치는 각 국의 정보화 정도, 정보산업정책, 국민들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관심정도에 따라 각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 3. 사회적 측면

모든 제도와 기술적인 보완장치가 강구되었다 하더라도 관리요원 개개인의 공직 윤리가 선행되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의 모든 법·제도·기술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또한 내용의 진실성확보의 노력 결여와 관리부서가 각 기관별로 상이하고 단지 전화와 통신 담당자의 기술 영역으로 인식되는 등 공공기관이 개인정보관리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치 못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第 4 節 個人情報保護 改善方案

### 1.제도적인 보호 방안

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설치되어 있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www.cyberprivacy.or.kr) 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대해 법률상의 고지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고지의무의 준수를 홍보·계도한 바 있다.

개인정보침해와 관련한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한 조치를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침해에 따른 피해가 다른 이용자에게 확산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용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침해 예방 및 침해당한 후의 사후 구제 방법에 대하여 상담을 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도 공정한 개인 정보 활용을 위한 상담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개인 정보 관련 법제도 및 기술적 보호조치 등에 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

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조정을 통해 신속·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분쟁당사자 쌍방에게 합당한 조정안을 제시하고 수락의 권고 및 조정을 하게 된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운영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가 한층 강화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인터넷 등 정보통신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가 많이 해소 될 것이다. 개인정보분쟁위원회의 사무국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설치되어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2.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의한 보호방안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 활용 정책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방침을 게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방침은 개인정보의 활용방안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인터넷상의 신뢰구축

에 반드시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방침이란 인터넷 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보호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82] 개인정보보호 방침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의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서는 웹사이트 모니터링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방침의 게시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표명한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참조하여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 할 수 있게 된다.

특정 혹은 불특정인의 개인 정보를 필요로 하는 많은 자들에 의하여 인터넷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침해 시도가 있으며, 침해 기법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주체는 아무런 대책을 세울 수 없고 사업자의 적극적인 보호에 의지할 따름이다. 따라서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도 정보의 일종임으로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미덕이 될 수 있다. 공정한 개인 정보의 이용은 개인 정보의 주체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 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잘 준수하는 한편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개인정보 이용 관행을 확립하여야 한다.[83]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82) 金世患, "個人情報保護:문제점, 현황 및 보안 정책제안", '95전산보안세미나: 전산보안 어떻게 해야 하나, 한국전산원, 1995, pp.185~189. 한국과학기술원 金世患 교수의 정책제안을 인용

83) 설립되는 정보보안센터에서는 ①情報保安에 관한 기술축적 ②정보보안표준

최근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경우 인터넷 사업자에게도 많은 피해를 주게 된다. 인터넷 사업자가 가입자 수를 부풀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을 받게 됨으로써 당해 인터넷 서비스의 신뢰감을 떨어뜨리게 된다. 또한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어 민원을 제기하는 이용자가 많아 고객지원 부서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게 된다. 이에 따라 인터넷 사업자들은 신용평가회사 및 신용집중기관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실명확인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실명확인과 관련하여 어느 기관에, 어떠한 정보를, 어떠한 목적으로 제공하게 되는지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 3.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방안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프라이버시(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문제는 업계의 자율규제뿐 아니라 정부차원의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상거래에 있어 거래의 대상인 고객과의 신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문제일 뿐 만 아니라 개인으로서도 자신에 대한 정보가 본의와 다르게 이용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업계 및 개인의 자율적인 규제의식도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온라인이라는 특성상 제재 정도의 강화나 원천적으로 봉쇄 등의 규제보다는 관련기관과 해당 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당장 우리나라의 경우, 온라인 전자상거래와 개인 프라이버시와

---

화 및 기준 제정 ③정보보안장비에 대한 평가 및 승인 ④情報保安에 대한 홍보 ⑤情報保安에 관한 교육 ⑥정보보안자료센터까지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관련된 분쟁이 발생 할 경우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법률, 제도를 정비해 가고 있다. 하지만 개인들이 다양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 활용하고 생산할 수 있게 된 반면, 자신들의 고유한 신상정보를 어떤 용도로 언제 어떻게 공개되는 지도 모른 채 그리고 어떻게 남용될지도 모른 채 내주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러한 정보유출로 겪는 개인적 피해는 여전히 사회문제로 남게 될 것이므로 정부차원의 규제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본다.

따라서, 민간차원의 자율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증을 시행하여 업계 자율적인 마인드 확산을 도모할 뿐 아니라 업계의 신뢰기반을 조성하고 온라인/오프라인 상거래의 활성화로 인한 시장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인증마크제도는 현재 한국 정보통신산업협회에서 개발 중에 있으며 2001년 하반기에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4.이용자의 대처방안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느끼는 점은 우리 국민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하여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타인에게 제공된 개인정보는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오·남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정보의 주체가 적절히 통제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적절히 보호하는지 평가해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민등록제도를 시행하면서 전 국민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거의 모든 인터넷 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유용한 정보로 인정하여 서비스 가입시 수집항목으로 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타인이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주민번호를 도용한 자의 아이디(ID) 삭제를 요청 할 수 있다. 또한 2001년 1월 26일 개정·공포된 주민등록법(2001.4.27 시행)에 의하면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및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부정발급 받아 사용한 후 대금을 연체하는 경우가 있다. 명의자는 신용정보회사 등으로부터 채권추심 및 신용불량등록의 경고를 받고서야 명의도용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이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검찰이나 경찰에 문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사업자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였다고 하여 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는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정보일 수도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따라서 수신자가 수신거부의 의사를 표명하기 전에는 광고성 정보를 수신하였다고 하여 당해 정보를 전송한 자를 처벌 할 수는 없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스팸메일)를 수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거부한 전자우편 등의 자료와 그 이후에 광고성 정보를 수신한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5.민간부문의 대처방안

민간부문에 있어서의 개인정보는 공적 부문에서와는 취급을 달리 하고 있다. 왜냐하면 보호의 상대방이 국가공권력이 아닐뿐더러 원칙적으로 개인 스스로 개인 관련 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대하여 결정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를 '정보의 자기결정권'(情報自己決政權) 이라고 일컫거니와, 사적 영역에 있어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입각하여 각 정보 주체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제공하고 거래하는 일이 빈번히 행하여진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에서는 정보주체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사실 시장 경제체제 하에서 각 경제주체들은 올바른 결정과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불확실성은 가능한 한 줄이고 필요한 정보는 되도록 많이 획득하려고 애쓴다. 예컨대 상품광고를 하더라도 광고타깃의 개인정보를 많이 알면 알수록 소구점(訴求店)이 명확해지고 소비로 유인하기가 쉬워질 것이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개인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 유통의 필요성이 증대되게 마련이다.

반면 시장경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개인 정보가 적절히 보호되어야 한다. 그것은 위에서 말한 마케팅 포인트를 찾아내기 위해 각 경제주체가 유용한 정보의 수집·분석에 힘쓰도록 창의적인 노력을 촉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확한 최신 정보를 유지·관리하는 것도 그 못지 않게 중요시된다. 또한 민

감한 정보, 예컨대 금융정보, 신용정보, 의료정보의 이용 및 유통에 있어서는 공정경쟁의 확보, 정보의 자기결정권보장 차원에서 보다 철저하게 개인정보 보호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第 5 章 結 論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정보인프라의 지속적 확대와 전 국민의 정보화 교육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세계는 이제 디지털 및 사이버라는 새로운 세계로 급속하게 변해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0년도에 미국과 더불어 세계에서 첫 번째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인터넷이 연결되어 본격적인 사이버 시대로 돌입하게 되는 또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지식정보 사회의 도래와 사이버 세계의 출현은 우리 인간 사회에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정보 통신, 금융교통, 국방 등 사회 전 분야에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러나 또 다른 부작용과 역기능 또한 이에 못지 않은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세계 각 국의 국민들은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져가고 있으나 우리나라 실정은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정보기술의 생활 속에 갑자기 파고들어 주민의 의식 부재 속에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발생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개인정보 보호 환경을 빠른 시일 안에 정착시켜야 할 것으로 보아진다.

이러한 정보화 역기능을 해결하는 데에는 정부의 제도적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참여와 법제도적 규율이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 제도적 기반을 확보해야 하겠다.

사이버테러의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적 장치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보안업무

규정에 의해 국가 보안 업무 차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 공공 분야에 대한 사이버테러 대응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 제도 마련이 요구된다. 따라서 국가 정보원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 정보 기반 보호 규정”이 빠른 시일 내에 제정되도록 추진되어야 하겠다.

둘째, 전산망시스템에 의한 기술 개발 및 보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개인정보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 기관의 운용중인 정보 시스템 특성에 적합한 보안 기술이 필요하다. 이에 필요한 보안 기술은 국가, 공공기관용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개발을 추진하되 산업체가 개발한 우수한 기술은 정보보호촉진법에 의한 평가, 인증절차를 걸쳐 국가, 공공기관에서도 사용 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불순한 침해에 대한 보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셋째,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활동이 중요하다.

산, 학, 관 공동으로 대학 및 대학원에 정보 교육 프로그램을 운용토록 유도하여 국가차원에서 정보 보호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해 나가는 한편 각급 기관, 민간부문 정보보안담당관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실무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개인정보 피해에 대한 예방 보안 활동 및 범죄수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정원, 정통부, 검·경 등 유관부처를 중심으로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한편 국제 간에도 정보공유 및 기술협력 확대도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법이나 제도적인 차원의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우선 공공기관에서부터 민간 부문에 이르기까지 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들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올바른 정보 윤리 의식을 확립할 때 실질적으로 個人情報保護가 이루어질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參 考 文 獻

## Ⅰ. 國內文獻

### 1. 書籍

김원동, 「정보사회와 지역 정보화」, 한울아카데미, 2001.
윤양수, 「행정법개론」, 濟州大學출판부, 2001.
배종대, 「형사정책」, 홍문사, 2000.
전권형, 「행정학개론」, 법문사, 2000.
김석호, 「정보사회론」, 나남출판사, 1999.
최동수, 「정보사회의 이해」, 법문사, 1999.
김경동・김용학 외, 「나남출판사」, 1999.
정정길,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1999.
권기현, 「21세기 과학기술혁명과 인류의 미래」, 경희대학교출판부, 1999.
윤석민, 「디지털TV 론」, 케뮤케이션북, 1999.
고영삼, 「전자감지 사회와 프라이버시」, 한울, 1998.
이해욱, 「멀티미디어 시대를 해부한다」, 한국경제신문사, 1997.
김광웅, 「방법론강의」, 박영사, 1997.
김부찬, 「법학의 기초이론」, 동현출판사, 1994.

### 2. 論文

박병호, “정보사회에서의 개인정보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 석사학위논문, 1989.
양해섭, “정보사회의 개인정보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지용섭, “정보화 사회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이준섭, “정보사회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전희진,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박순박, “정보사회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법적보호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유종석, “프라이버시권의 보호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신차섭,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적고찰”,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3. 硏究報告書

김일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997
국가정보원, “제 5회 정보보호 심포지엄”, 한국정보보호
정인영・최규영・정희진, “세계 주요국의 정보화정책 분석”, 정보통신연구원, 1997.
김재성 “내외컴퓨터 바이러스 현황과 대책”, 정보보호뉴스, 99.8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4. 刊行物

시큐리티정보, “정보보호21세기”, 2001.
조선일보사, “월간조선”, 2001.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발전 종합대책”, 정보통신부, 1996.
———— “정보통신망 고도화추진화계획”, 정보통신부, 1997.
한국전산원, “정보자원 관리체계의 도입 방안 연구”, 한국전산원, 1996.

## Ⅱ. 外國文獻

Society, Computer Science and Telecommunication Board,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Productivity in Service," *Academy of Management Execuive*

Adams. s. Farrell, Internet X · 509 Pulliclcey infrastructure certiticate management protocol, RFC 2510, march, 1999.

Enabling privacy commerce security and public safety in the 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OMB Report, may, 1996.

Administration of Export controls on Encryption products, U.S Exective order 13026, Nov, 1996.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Directive of the Europen parliament and the council concering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he Telecommunications sector.

「International infrastructure for Golobal security incident Response」, moira west-brown klaus-peter kossakowski 11th first, June, 1999

「Poteetion and security on the information seperhighway」, Fredric cohen 1955

Bell, Daniel. The Corning Post-Industrial Socirty: A Venture in

Society in Social Fprecasting, New Yor : Basic

Machlup, Ffitz.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Knowledge in the United States,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2

Masuda, Yonrji. The Information Socity as Post-Industrial Society, Tokyo : Institute for information Society, 1980.

Miller, Arther. The Assault on Privacy (Ann Arbor, Michigan :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72.

Warren & Brandais. The Right to Privacy, Harvard Law Rcview, Vol. 4 1980.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Wool, C. C., "How many information security staffs people should you have?" . Computer & Security, Vol 9.

U.S Department of Commerce (1997), Privacy and self-regulation in the Information Age,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Commerce (1998), The Emerging Digital Economy Report.
〈http://www.ecommerce.gov/viewhtml.htm〉 1998. 4.

Whitaker, Reg. The End of Privacy. New York: The New Press, 1999

Williamson, Oliver E. Markets and Hierarchies: Analysis and Antitrust Implications.

New York: The Free Press, 1975.

P.F. Drucker. The Age Of Discontinuity : Guidellnes to our changing society (N.Y: haper of row .1968).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abstract

A Study on Protection of Private Information in an Informational Society

Kim Young-jin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Gaduate Schoolof Public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Yun Yang-su

Every country in the world has been trying its best to establish an infrastructure such as a super high information network in order to stand in a dominant position in an informational society. Like the United States, Korea has already established such a super high information network which enables us to access information in every region in the country. As a result, our society is on the threshold of the cyber age. It is true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cyber world is expected to bring about a lot of benefits in our lives. Nevertheless, we cannot ignore negative points, for we live in the danger of distribution of disinformation and leakage of private information. Accordingl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find a solution to the problems by researching and analyzing data from literature and cases in the legal, institutional and social area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1) Plan to Apply Reinforced Laws for the Protection of Private Information

The existing laws for the protection of private information prohibit the leakage of private information in office automation, However, to protect private information more efficiently, additional laws should be established and applied to the filing of paper documents.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Establishment of Criteria for Private Information

Criteria for the protection of private information should be considered on the basis of the international criteria. That is to say, individuals should be informed of who , when , where and to what purpose. when their private information is revealed. And minimum private information only should be given for the defined purposes.

3)Establishment of New Laws for the Amendment and Supplementation of wrong private information

Korean laws for protection of private information, rights for admission, correction, administrative judgement, and demand are guaranteed. However, more efficient laws should be established for more active protection.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In the Aspect of Policy

The same problems of information maintenance have been issued in both private and national networks. For this solution, an informational security center should be established which can function as an organization for national security, the prevention of privacy infringement, hacking and the protection of business information.

3. In the Social Aspect

The more advanced information society can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computer network systems should be possessed by individuals, rather than by special authorities or groups. Accordingly, the protection of private information should depend on individual conscience. Therefore, a more efficient way to protect private information can be established by smaller conscience centered societies.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